

# 2019 한국 인권보고서

2019 Korea Human Rights Report

2019 한국 인권보고서

2019 Korea Human Rights Report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 Korea Human Rights Report  
2019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19년 12월 9일

발행인 김호철

발행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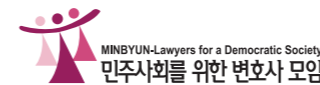
(서초동) 대덕빌딩 2층

TEL 02-522-7284 FAX 02-522-7285

E-MAIL admin@minbyu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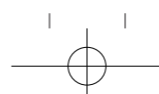
http:// minbyu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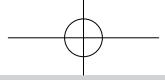
\*PDF 파일은 민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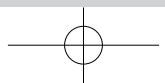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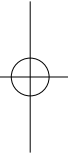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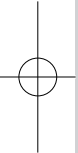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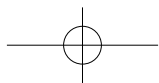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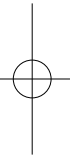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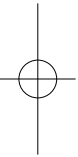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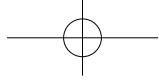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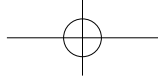




# 2019 한국 인권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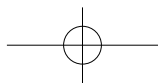
# 2019 한국 인권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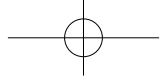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019 Korea Human Rights Repor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목차

---

[발간사]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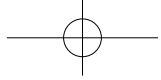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9

---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 19 (\*내용은 PDF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19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1
- 2019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105
- 2019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125
- 2019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143
- 2019년 노동 분야 보고 | 149
- 2019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 227
- 2019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265
- 2019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283
- 2019년 사법 분야 보고 | 307
- 2019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 337



- 
- 2019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 | 383
  - 2019년 언론 분야 보고 | 451
  - 2019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 447
  - 2019년 통일 분야 보고 | 539
  - 2019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 571
-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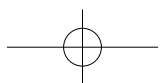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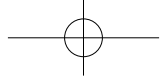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제3부] 집중조명 | 639

-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 | 641
  -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 701
- 

자료 1. 직장갑질 119 | 745

자료 2. 고 김용균 재단 | 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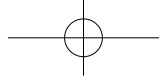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발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공동으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법률전문가단체인 민변과 현장 활동가들의 단체로 조직된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작년에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깊이 성찰해보자는 취지에서 실험적으로 공동작업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작업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성과 평가를 거쳐 올해에도 거듭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에서 새로 탄생한 모범적 활동이 뿌리를 내리며 인권운동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징표여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여겨집니다.

올해 2019년은 고 김용균 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각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자 경향신문 1면에 하단 광고도 없이 깨알 같은 활자만으로 실린 산재 사망노동자 1,200명의 명단은 우리 사회가 2019년에도 여전히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을 지속하는 ‘한 해 평균 산재 사망노동자 2,000명 이상’, 무섭습니다. 무서운 숫자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 이 숫자는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사교육과 절세로 신분을 세습할 수 없는 입장에서 출산은 전장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 지속되는 이 숫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불평등’입니다.

올해의 인권보고서는 별도의 기획이 있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를 일독할 때 불평등이라는 맥락을 설정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변 15개 상임위원회가 보고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권현황들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상들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병리들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구조도 짚어내 드릴 것입니다. 1%의 행복을 위해 99%가 존엄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



법에서 평등권이 인권 목록의 맨 앞에 위치하고 인권운동이 불평등한 현실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에도, “감춰지고 미뤄지기 쉽지만 가장 긴급한 언어들, 광장이 드러내지 않은 불편한 존재들의 언어를 드러내며 부당한 현실을 고발”(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 인권상황보고)하는 도전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대가로 얻게 되는 무거운 과제들을 어깨에 떠메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디딤돌 판결은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였지만 걸림돌 판결은 어깨를 천근만근으로 짓눌렀습니다. 올해도 인권보고서는 이런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불편한 존재들의 언어’는 별도의 자료에 직접 화법으로 생생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장에서도 터져 나오는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매개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강제동원 사건’, 두 개의 현안문제를 훑아보며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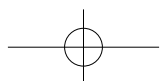
한편, 이 번 인권보고서는 발간형식에 일대 변화를 주었습니다. 종이와 PDF 파일을 결합시켜 민변 15개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 분야별 인권 현황-분야별 보고’는 종이 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PDF 파일에 담아 민변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보존도 간편하게 하고 자료의 활용도도 높이는 다중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혹여 기존 체제에 익숙했던 분들께서 불편함과 아쉬움을 가지신다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권보고서발간과 인권보고대회 개최까지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 두 단체의 회원들은 또다시 일상을 쪼개고 밤잠을 설치는 노고를 기울였습니다. 그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단체가 최선을 다해 펴낸 이 보고서가 부디 우리 사회로 하여금 평등을 향한 도전과 연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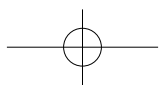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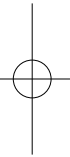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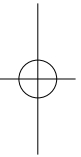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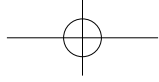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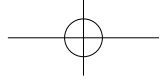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회장 김호철

발간사 7









#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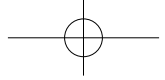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집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2019년 한해를 돌아봅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었던 2018년 12월 10일,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반복되는 비극을 멈춰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2019년을 맞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됐지만, ‘함께’라는 범주가 모두에게 열려있지는 않았습다. 어떤 사람을 ‘나중’으로 밀어내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며 배제하고 삭제하는 시도에 맞서 바로 ‘지금’ 인권의 요구라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5.18민중항쟁,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흐름에 맞서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진실과 정의를 세우려는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 한국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로 주목 받으며 많이 이야기된 것이 ‘공정함’이었습니다. 공정에 대한 열망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룰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가능성을 각자가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



평등한 구조의 문제를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문제로 뒤바꿉니다. 공정이라는 환상에 가려지는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야 바로 지금 ‘평등’이라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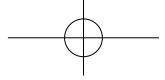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019년 한국사회를 함께 살아가며 인권운동이 지키고 만들어간 다양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있는지 몇 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나누며, 다시 또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 1. 혐오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평등을 위협하는 혐오와 차별

2019년, 또 다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의 노골적인 언어들, 전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기초·광역지자체들마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단어를 둘러싼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작년 조례 폐지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인권조례폐지사태 당시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만큼 많은 지역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다양성으로 포장하여 무슬림들을 들이려고 한다’, ‘인권조례는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와 같은 말들은 전국 곳곳 굵이굵이 시민들의 삶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권기본조례, 문화다양성조례, 학생인권조례들이 부결되거나 이미 있던 조례들이 사라졌습니다.

성소수자를, 이주민을, 난민을, 장애인을 공격하는 이들은 말을 무기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일부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들마저도 시민 중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하하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적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정치인,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깎아내리는 정치인, 누군가의 삶의 지향을 찬반의 대상



인 것처럼 분별 못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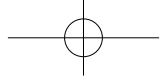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급기야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악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4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 혐오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행동

한편, 혐오에 맞서고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을 북돋는 시간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간한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처럼 우리의 대항적 말하기를 확산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조례들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힘을 합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없는경기도를위한범도민행동은 속수무책 조례들이 무너지는 와중에 경기도는 성평등 조례를 지켜냈고, 의원과 도민이 힘을 합쳐 지금도 이어지는 혐오선동세력의 압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에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제히 비판 성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혐오에 질리고 지친 시민들도 이제는 단호히 혐오를 물리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혐오발언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일부 정당들에서 세우게 된 것도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어떤 이들의 시도가 날로 악랄해지고 있으나 그에 맞서는 이들 또한 호락호락하게 혐오에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9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평등을 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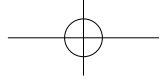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2. 존엄한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제 몸을 불태워 이 땅의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 13일, 청년 전태일 옆에 정규직이 꿈이었던 태안화력발전소 스물네 살 김용균 님의 얼굴이 현수막에 같이 걸렸습니다.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지 49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비정규직’과 ‘위험’ 두 단어가 빚어내는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고 김용균 님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1월,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 개선, 안전보건 체계 마련, 고용구조 개편, 법 제도 개선 등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는 것을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쌓아온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직원을 죽거나 다치게 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외주화’되고 있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에 내몰리지만, 사업주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이 안전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위험은 오늘도 위험에 내몰립니다. 위험한 일터를 바꾸려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의 권리가 모두에게 온전히 보장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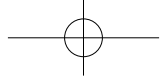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수개월을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도로공사는 교섭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질 직업’이라며 쉽게 얘기해버립니다. 정규직화 요구는 그저 고용형태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 특수고용 등 다양한 비정규 노동의 형태로 쪼개면서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위협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온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일하는 누구에게라도 온전히 보장될 때 존엄한 노동은 싹틀 수 있습니다.

2019년 이 땅에 노동자들의 삶과 자존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협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생명과 안전, 생존을 주제로 우리는 아직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할 게 많습니다.

### 3. 무엇을 위한 권력기구 개혁이어야 하나

#### 여전한 경찰, 검찰, 국정원

올 초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의 유착이 드러났습니다. 2009년 고(故) 장자연 리스트,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등을 다루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의 ‘외압’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장학썬’으로 묶여 불리게 된 이 사건들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공유하며 남성권력을 유지하고 지탱해왔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을 놓고,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요란함이 무색하게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나 진상조사는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의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 삼성의 손발 노릇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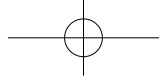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해운 정보경찰의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자본권력 편에서 노조파괴 기업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정보경찰은 정치권력에 맞춤형 충성을 해왔습니다. 선거개입·불법사찰이라는 위법한 정보활동이 드러나고, 강신명, 이철성 전직 경찰청장들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서로를 나치 게슈타포와 중국 공안으로 빗대며 깎아내리던 경찰과 검찰은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나란히 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어떤가요? 지난 가을 드러난 ‘프락치’ 공작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권은 바뀌어도 국정원은 그대로였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폐지하며 국내 정치와 절연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했지만, 대공수사라는 명목 하에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락치’ 공작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내사’를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기구들이 ‘공안’이라는 칼날을 언제든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뿌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 권력기구를 위한 권력기구 개혁이 되지 않으려면

‘환골탈태’, 권력기구 개혁이 이야기될 때 함께 따라붙는 말입니다. 적폐청산의 과제로 권력기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구들은 저마다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며 적폐로 지목된 과거와 단절하고 변화할 것처럼 나섰습니다. 권력기구별로 개혁방안에 대한 권고들이 있었지만,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과정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은 국회 앞에 가로막혀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그 자체가 권력기구 개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장학선’ 사건들이 보여주듯 경찰과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지만, 이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의 잣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대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



권은 더 부각하고 어떤 사건은 적극적으로 덮어왔습니다.

무소불위 검찰, 베일에 감춰져온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경찰로 수사권을 조정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자치경찰제로 분산시킨다는 방향입니다. 권력기구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이야기되는 이러한 논의는 권력을 분산하면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권력의 총량과 성격을 그대로 둔 채 각 기구 간 권력을 조정하면서 형식적인 권한 배분에만 그친다면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도해온 슬한 사건들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공조와 가담을 통해 서로를 뒷받침해왔습니다.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권력의 총량과 성격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안은 아닙니다. 권력기구를 위한 권력기구 개혁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야 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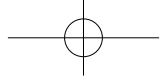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2019년이 남긴 인권운동의 도전과 과제

### 인권의 빈칸들

‘인권’이 혐오의 수식으로 전락하고 사회적 소수자들만이 요구하는 가치인 것처럼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인권은 외려 모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권리로 거듭 요청됩니다. 그것은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와 더불어 검찰개혁이 정치적 논쟁으로 휘발되는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로 빈칸처럼 남아있습니다. 인권의 빈칸 주변에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다양한 맥락으로부터 발견하며, 인권의 언어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 대학로에는 5천 명의 시민들이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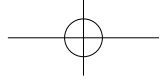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회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는 이들은 세대와 소속을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 파괴 등의 화두에만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심의 경제체제와 산업구조가 노동 유연화와 양극화에 가속을 붙인다는 문제의식은 곧장 생존을 향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빈곤과 불안정한 삶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인권의 빈자리를 읽는 긴급한 시도들은 다른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가을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거취와 검찰 개혁을 화두로 진행된 서초동과 광화문의 대중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으로 갈린 정국 속에서 서초동으로도, 광화문으로도 쉽사리 발길을 향할 수 없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에서,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외주화된 비정규직이었고 폭력과 차별의 일상으로부터 안전과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이었으며, 접근을 거부한 채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 가두는 장애인이었으며 국민의 영역에서 외부인으로 구분되어 낙인찍히고 제도로부터 밀려나는 이주민이자 난민이고 성소수자였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장소를 향했지만 서로 다른 외침들은 인권을 향하였습니다. 감춰지고 미뤄지기 쉽지만 가장 긴급한 언어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광장이 드러내지 않는 불편한 존재들의 언어를 드러내며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인권을 갈망하는 이들은 지구적 재난으로부터, 광장의 목소리로부터도 자신이 어떻게 배제되고 삭제되며 착취되고 있는가를 읽어냈습니다. 그로부터 이들은 서로의 인권의 자리를 확보하고 인권의 언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의 감각 너머 생애에 걸친 그물들을 세고 꿰는 것과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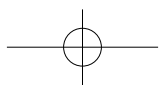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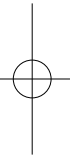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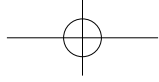
### 인권, 저항을 조직하는 언어와 운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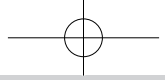
수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시민항쟁은 많은 시사점과 고민을 안겨줍니



다. 홍콩 시민항쟁은 자결권 뿐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쟁과정 중에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은 이들의 시민권이 곧 인권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와 연결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권이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변화 가능성을 열어낸다고 할 때, 그렇다면 먼 거리에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인권운동의 언어는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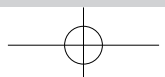
인권의 언어는 당사자의 생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권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개발정책과 빈곤의 영속화, 정치적 이념, 이권갈등의 근원에 배제되고 삭제되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행동들에 귀를 함께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 너머 고립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손잡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권을 생존에 국한시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프레임 너머 변화와 저항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엽니다. 이제 인권운동 앞에는 삶의 감각으로부터 어떻게 인권의 언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저항의 감각을 어떻게 발견하고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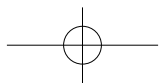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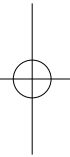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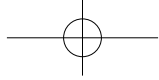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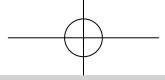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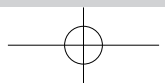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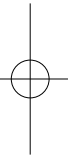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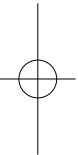
\* 해당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 등에 공유된 PDF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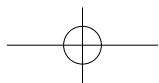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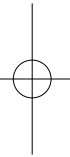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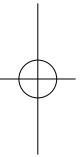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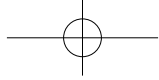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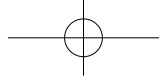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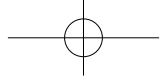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1.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경과

올해 ‘민변’ 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그리고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발표하게 된 ‘2019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변 부회장이자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인 조숙현 변호사가 맡았고,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 한채운 활동가(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미루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그리고 박정은 사무처장(참여연대), 신수경 대표(새사회연대),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유설희 기자(경향신문),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민변의 15개 위원회와 민변 회원, 인권단체(천주교인권위원회)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결정을 대상으로 디딤돌·걸림돌 후보 판결들을 추천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판결들과 2019. 10. 31. 이후에도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들을 대상으로 놓고, 사건(소송)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려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각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2건을 공동으로 선정하였다.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자기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다만,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규율의 공백을 저어하여 기본권 침해 상태를 입법시한까지 존속시킨 법정의견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들 사이의 파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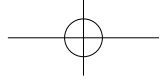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혹은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는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사업 주로부터의 해고 혹은 사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파견근로자들을 불안전고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 외에도 디딤돌 판결과 관련하여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죄책을 인정한 형사 판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었다. 이 판결들은 2018년 선정 최악의 걸림돌 판결의 각 상급심 판결로, 원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기존에 걸림돌 판결 선정과 함께 비판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제기를 새로운 디딤돌 판결의 선정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영향력을 가진 판결들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그 밖의 후보 판결을 소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영상 제작자들의 제작 행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면 안 될 요소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부당하게 보아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 형사 판결(항소심)이 선정되었다. 피고인의 사이트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반인륜적인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각 제작자와의 공모관계를 부정한 점,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라는 보호법익과 무관한 범죄수익의 환수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한 점 등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법률규정의 규범력을 사법부 스스로 저하시킨 것으로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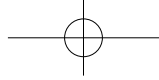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2. 10대 디딤돌 판결

### 가. 최고의 디딤돌 판결 (무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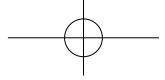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1)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결정

<p>선고법원 (사건번호)</p>	<p>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p>
<p>관여법관</p>	<p>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 단순위헌의견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 : 합헌의견</p>
<p>판결요지</p>	<p><b>1. 사건의 개요</b>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음(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그 신청이 기각됨(광주지방법원 2016초기1322). 이에 청구인은 2017. 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p> <p><b>2. 결정의 요지</b>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의견 -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p>



판결요지

-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 인적(全人的) 결정임.
-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음.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김. 더욱이 입법자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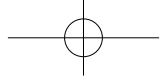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판결요지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짐.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단순위헌의견

- 헌법불합치의견이 지적하는 기간과 상황에서의 낙태까지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함.
-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함.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자기결정권도 태아의 성장 정도, 임신 제1삼분기를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낙태로 인한 임신한 여성의 생명·건강의 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 한편,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의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와 특정한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의 문제가 결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될 수 있음. 그러므로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삼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지는 안전한 낙태조차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판결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이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고 사후입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도록 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규율의 공백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가혹함. 또한 심판대상조항들 중 적어도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진 낙태에 대하여 처벌하는 부분은 그 위헌성이 명확하여 처벌의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함.

○ 합헌의견

-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덜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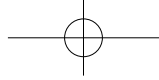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다수의견이 설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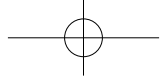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 결정의 변경

○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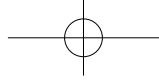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4인이므로, 단 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해를 달리하여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건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됨.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되,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 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p> <p>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건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 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함.</p> <p><b>3. 주문</b></p> <p>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p>
<p>선정이유</p>	<p>○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까지 66년 동안 국가는 가족계획, 인구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낙태죄의 사문화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자기결정 권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2010헌바402 결정에서 도 태아의 생명을 공익의 위치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의 위치에 두 고 두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으며 낙태죄의 처벌 범위를 좁히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p> <p>○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2017헌바127 결정에서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무 엇보다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단순히 충돌하는 관계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태아와 임신한 여성이 “서로 독립 적이면서도 의존적인 매우 독특한 관계”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p> <p>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하여도, 착상후 출산 전까지는 생명권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난 2010헌바402 결정과 달리 태아는 발달 단계에 따른</p>



선정이유	<p>보호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생명보호의 차등을 인정함.</p> <p>또한 이번 결정에는 임신이 여성에게 끼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중대한 부담에 관한 충실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런 이해를 토대로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여성의 임신중단 결정이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강조함.</p> <p>그 외에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단을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낙태죄가 실효성 있는 수단은 아닌 반면 부정적 영향은 크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p> <p>○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여성이 시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리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 12. 31.까지 새로운 입법을 준비할 것이며, 이번 결정의 요지들은 향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관련한 법 또는 정책 마련의 기준점으로 기능할 것임. 따라서 자기낙태죄 규정의 위헌성을 66년 만에 확인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 자기결정권 등 임신중단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올해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함.</p>
------	--

2)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혹은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는 근로자들과 외주사업체(사용사업주) 사이의 해고·사직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근로자지위확인) 등
관여법관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주심), 대법관 김상환
판결요지	<p><b>1. 판결 요지</b></p> <p>가. 원고들(통행료 수납원)과 피고(한국도로공사)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p> <p>○ 관련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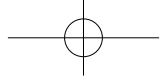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판결요지

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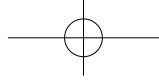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구체적 사실관계

- ①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음.
- ②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③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역본부의 주관 아래 실시되었음.
- ④ 피고는 각종 지침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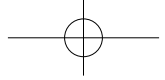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p><b>판결요지</b></p>	<p>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p> <p>⑤ 외주사업체는 대체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외주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형성되어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의 수행만을 위해 서만 존재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음.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별 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p> <p>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게 고용된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p> <p>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p> <p>○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p> <p>○ 한편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단서와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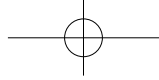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음.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p> <p><b>2. 결론</b></p> <p>○ 이상 기재한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일부 파기환송 부분 제외).</p>
선정이유	<p>○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였음.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한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고, 사실상 용역업체가 중간 착취하는 형태임을 명백히 밝힘</p> <p>○ 이 대법원 판결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p> <p>○ 기존 판례(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판결)는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p> <p>○ 2019년 디딤돌 판결은 위 2015년 판결에서 더 나아가, '파견법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간주 및 사용사업자의 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임. 해당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파견법 제정 취지에 보다 충실히 부합하는 판결이라 할 것임.</p>



나. 그 밖의 10대 디딤돌 판결 (무순위)

1) 장애 유형 관련 시행령 규정 외라고 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 취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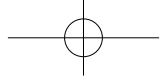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관여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판결요지	<p>1.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위와 같은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제2조 제2항).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 종류로 15가지를 규정하고 있음.</p> <p>2. 피고가 뚜렛증후군을 가진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상고 기각함.</p>
선정이유	<p>○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치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중증 암 환자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은 이 사건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여 왔음.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 이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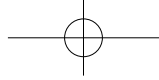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선정이유	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복지 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

2) 장신대 학생들의 성소수자 혐오 반대 퍼포먼스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 및 무효임을 확인한 본안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7.자 2019카합10114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징계무효확인
관여법관	가처분 : 윤태식(재판장), 김동욱, 조실 본안 : 심태규(재판장), 전상범, 신재호
판결요지	<p>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p> <p>가. 기초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는 종교적 신조 및 헌법에 의거하여 목회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임.</li> <li>○ 원고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의 옷을 입은 채 나란히 앉아서 교내 예배에 참석하여 6색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또 다른 학생은 그 옆자리에서 6색 무지개 깃발을 몸에 들렸음.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예배 후 예배당 안에서 6색 옷 배열에 맞춰 서서 깃발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위 사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글을 게시하였음.</li> <li>○ 피고는 대학교 총장 명의로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A에게 6개월 유기정학 및 봉사활동 100시간 등의 징계를, 원고 B,C,D에게는 각 근신 및 봉사활동 100시간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음.</li> </ul> <p>나. 당사자들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들은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징계사유 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반면 피고는 징계처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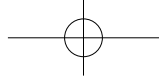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정당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주장함.</p> <p>2. 이 법원의 판단</p> <p>가. 절차상 하자 유무</p> <p>○ 원고들의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임받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원고들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바 없이 원고들의 진술서를 제출받았을 뿐임.</p> <p>○ 조사보고서 및 원고들의 진술서가 징계위원회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보고서에 기재된 면담 내용에 비추어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징계사실 및 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p> <p>○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에 징계사유,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p> <p>○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시 징계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당시 회의록에 징계처분, 징계대상사실,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이에 관한 의견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음.</p> <p>○ 징계처분장에도 징계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처분대상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p> <p>○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은 무효임.</p> <p>나. 실제적 하자 유무</p> <p>○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므로, 실제상 하자를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p> <p>다. 결론</p> <p>○ 징계처분은 무효임.</p>
<p>선정이유</p>	<p>○ 학생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학교법인이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억압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중 하나임.</p> <p>○ 무지개 색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소</p>



선정이유	<p>수자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용인될 수 없고, 위 판결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환영받을 판결임.</p> <p>○ 다만, 가처분 결정에서는 법원이 징계절차의 하자 이외에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학교의 행정·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실체상 하자도 판단한 반면, 본안 판결에서는 실체 상 하자 자체에 대하여는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음.</p>
------	--

### 3) 부마항쟁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임을 확인한 재심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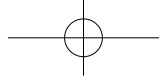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관여법관	대법원 제3부 :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민유숙, 김재형(주심)
판결요지	<p>○ 1979년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내렸던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p> <p>○ 대법원 3부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영일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p> <p>○ 대법원은 “1979년 10월18일 공포된 계엄 포고 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 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p>
선정이유	○ 1979년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내렸던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



선정이유	<p>○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의 계엄 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당시의 정치·사회 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마 민주항쟁의 성격과 1979년 10월 18일 발령된 비상계엄 포고1호의 성격을 판단.</p>
------	---

#### 4) 여순사건 희생자 ‘손가락 재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결정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9. 3. 21.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관여법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주심),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
판결요지	<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사망한 고(故)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재항고심에서 재판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p> <p>○ 다수의견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의 민간인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이씨 등의 연행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이 발견되지 않아 재심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자체인 것은 아니며 판결서가 없다고 해도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된다”며 “이씨 등의 판결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내용과 이름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다”고 판단.</p> <p>○ 이에 대해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심이 불가하다는 반대 의견.</p>
선정이유	<p>○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사 사건인 여순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재심개시결정.</p> <p>○ 특히, 실제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진행된 이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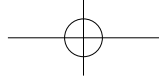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선정이유	바 “손가락 재판” 으로 불리는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한 재심 개시결정의 기준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하였고, 다수의견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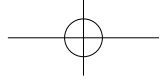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5) 테러방지법으로 첫 기소된 외국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판
관여법관	이세창(재판장), 조동은, 황미정
판결요지	<p><b>1. 테러단체의 가입의 선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표현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라면 누구나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문맥이나 정황 등에 의하여 그것이 테러단체 가입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야 함</li> <li>○ 선동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정황 등에 의하여 테러단체 가입에 관한 내용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li> <li>○ 선동의 대상이 되는 테러단체의 가입에서 ‘가입’은 테러단체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테러단체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상당한 표지가 있어야 함</li> <li>○ 테러단체가 내세우는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의 선동이 될 수는 없고, 어떤 표현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의 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입에 있어서는 선동행위의 내용, 선동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객관적 상황, 선동행위가 택한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li> <li>○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테러단체 가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나 수단, 절차 등이 그 표현행위에 개략적으로라도 드러나 있거나, 표현행위가 취한 매체, 표현행위가 행하여진 맥락과 정황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 의하여 쉽게 추단될 수 있는지, 피선동자가 선동자의 성격, 위치 또는 지위 등에 비추어 선동하는 테러단체 가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한지 등을 중</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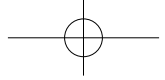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합하여 그 표현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피선동자로 하여금 실제로 가입을 선동한다는 진지한 인상을 줄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러단체 가입 선동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테러단체 가입’을 테러단체 권유가 문제될 때의 ‘테러단체 가입’보다 부당하게 확장하여 새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li>○ 선례가 없는 이 사건에서 외국의 입법례나 해석론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나, 외국의 법제의 논의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li> </ul> <p><b>2. 테러단체 가입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위반죄 성립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li> <li>○ 사진, 기도글, 개사글 등은 IS를 찬양하는 내용일 뿐이고, IS 가입을 구체적으로 선동하는 내용이라 추단할만한 표지를 담고 있지 않음</li> <li>○ 페이스북에 게시한 아크마 통신 텔레그램 링크는, 타인이 게시한 것을 공유한 것일 뿐이고, 링크를 통하여 대화방에 접속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아크마 통신 명의로 신규대원을 모집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음. 즉 피고인이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단체 가입수단을 제공한 것이라 보기에는 극복해야할 논리적 비약이 잔존함. 위 링크로 연결되는 대화방의 성격과용도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1:1 대화방 접속이 구체적, 현실적인 테러단체 가입단계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님.</li> </ul> <p><b>3. 결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함.</li> </ul>
<p>선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적용사례로, 피고인은 IS에 대한 일시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외국인으로 SNS에서 IS에 대한 지지, 표현행위를 테러단체 가입 권유 및 선동행위로 기소했던 사안임.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일부유죄 선고를 하여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음.</li> </ul>



선정이유	<p>○ 항소심 재판부는 선동행위의 판단기준으로서 “그 표현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선동자로 하여금 실제로 가입을 선동한다는 진지한 인상을 줄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른바 ‘객관적 진지성’ 요건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음.</p> <p>○ 해당 판결이 죄형법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테러방지법 적용의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테러’라는 막연한 공포와 이슬람계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다짐돌판결로 선정함.</p>
------	--

6)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선별적 HIV/AIDS 검사 국가배상청구 인용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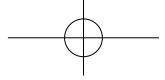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선고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124207 판결
관여법관	판사 김국식
판결요지	<p>1. 사실관계</p> <p>○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년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이후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함.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함.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p> <p>2. 판단</p> <p>○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p>



판결요지	<p>행위”라고 판단함.</p> <p>○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p> <p>○ 따라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함</p>
선정이유	<p>○ 법원이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p>

7)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주민소송 원고 적격을 인정한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p>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 (상고기각)</p> <p>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원심)</p>
관여법관	<p>대법원 판결 -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p> <p>고등법원 판결 -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p>
판결요지	<p>1. 사랑의교회(이하 ‘보조참가인’)는 2009.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하였음. 서초구청장(이하 ‘피고’)은 신축 교회 건물 중 남측 지하 1층 325㎡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위 참나리길 지하 일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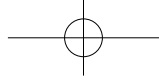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이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였음.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교회시설을 설치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서초구 주민 293명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하였음. 서울특별 시장은 2012. 6. 1. 피고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시정하라는 조치요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조치요구에 불복하자 원고들은 2012. 8. 29.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음.

3. 이 사건은 이 판결을 포함하여 6번의 판결이 있었음. 먼저 1, 2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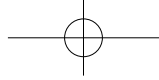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4. 파기환송 후 1, 2심에서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공유재산법 위반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음. 대법원은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에 관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다만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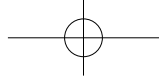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선정이유	<p>○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주민소송의 대상만 열거하고 있고 위법성 심사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만약 위법성 심사기준이 주민소송의 대상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위법성 심사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판단 대상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 즉 처분이 헌법, 법률,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고 보아 주민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p> <p>○ 행정활동에 대한 민주주의적 사법통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암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주민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 사건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항고소송으로는 다투기 곤란하였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서 나아가 위법성 판단기준까지 명확하게 판시하며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인정하였는바, 향후 주민소송이 활성화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평가됨.</p> <p>○ 참고로 보조참가인은 주민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관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함께 기각하였음.</p>
------	--

8) 시간강사의 강의로 차등지급(전업·비전업 구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임을 확인한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관여법관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p>판결요지</p>	<p>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게 전업강사(다른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이 강의에만 전념하는 강사) 강의를 지급했다가 나중에 비전업 강사로 확인되자 기지급된 전업강사 강의료 중 비전업강사 강의료와의 차액분을 반환 통보하고 해당 강사에게 그 이후부터는 비전업강사의 강의료 수준으로 감액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건에서, 비전업강사에게 전업강사와 비교해 차등 임금을 지급(시간당 강의료가 전업강사는 8만원, 비전업강사는 3만원이었음)한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p> <p>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 11조 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립대학의 장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전업 여부나 사용자측의 재정 상황이라는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임금 차등을 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차등 임금 약정은 위 헌법과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조항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p>
<p>선정이유</p>	<p>위 판결 이전 법리에 따르면 같은 비정규직(비전업강사와 전업강사는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다)인 비전업강사가 전업강사와의 차등 임금을 이유로 차액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리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직접 근거로 차액 임금청구를 구성하는 것 또한 헌법해석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된 사회적 신분 등으로 포섭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법원은 최근에서야 MBC 사건(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과 경찰청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에서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는 정도다,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남</p>



선정이유

녀간에만 적용되는 듯한 판시가 있을 뿐이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비전업강사의 임금 차별을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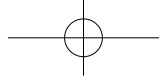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번 판결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등 이외에도 전업 여부 등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균등대우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적인 것으로 판단한 첫 판례로 보인다. 향후 같은 비정규직 내부나 같은 정규직 내부 차별 등 다양한 차별 사례에서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이번 판결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성별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기존 판결은 ‘동일가치노동’을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을 전제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은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라고 표현) 위 원칙의 규범력을 확대했다.

셋째, 이번 판결은 균등대우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상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함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근로관계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규범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전체 대학 교원의 약 40%가 강사고 그 중 약 40%가 소위 비전업강사다. 비전업강사의 강의료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해마다 전업강사와 그 격차가 심화돼 현재는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같은 강의를 하면서 불분명한 기준인 ‘전업’ 여부에 따라 이렇게 큰 임금 차이가 난다는 현실이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4년 만에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업·비전업강사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이유로 한 장기간 왜곡되고 불합리한 강의료 지급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 강사들의 임금 및 고용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선정이유	<p>인다. 당장 이번 판결로 정부는 국립대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액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향후 비전업강사의 차등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립대 강사에 대한 사건이지만 법리상 공립과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학교법인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저임금의 비전업강사 양산이라는 대학들의 꿈을 제어해 고용구조 개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물론 이번 판결 이후 대학들이 임금의 하향평준화나 강사 고용 축소라는 부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 조치를 선도해 전체 강사의 처우 및 고용형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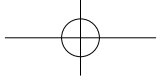
### 3. 10대 걸림돌 판결

#### 가. 최악의 걸림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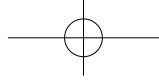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
관여법관	○ 이성복(재판장), 이수영, 김동현
판결요지	<p>1. 주문</p> <p>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p> <p>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p> <p>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p> <p>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p>





<p>판결요지</p>	<p>2. 이유</p> <p>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p> <p>○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어린시절 성장과정, 달리 범죄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다수 존재하는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부양가족이 생긴 점</p> <p>나. 판단</p> <p>○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를 사들여 비트코인 계좌로 이용대금을 수령</p> <p>- 4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취득, 이 사건 범행 관련 검색 등 위법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p> <p>○ 2년 8개월 동안 회원 수 128만명, 저장된 음란물 약 170,000건, 10개월 동안 다운로드 약 36만건</p> <p>다. 해당법조 등</p> <p>○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배포·판매·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p> <p>○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대상이 아님</p>
<p>선정이유</p>	<p>1.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 ‘제작’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p> <p>-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적용법조인 같은 조 2항에 비해 중하게 처벌</p> <p>-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회원 및 신규 회원을 모집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존에 업로드 된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비교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음란물의 제작을 공모함(2018년 8월 미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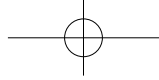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선정이유	<p>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견 역시 이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음란물의 제작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물이 양산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li> </ul> <p><b>2.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참작한 결과 범죄의 위험성, 규모, 피해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형을 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판결은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 또는 추징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를 범죄수익의 환수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는 재산범죄와 동일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할 요소를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함.</li> <li>- 선정 판결은 회원이 사이트에 업로드 한 음란물도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회원들과 피고인이 공모를 통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타당함.</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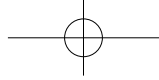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나. 그 밖의 걸림돌 판결 (무순위)**

**1)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有)**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관여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p><b>1. 판단</b></p> <p>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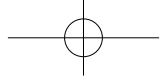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p> <p>나.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초한 것으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은 제외되고 있는 점, 그 연혁과 도입경위를 살펴볼 때 본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점, 1년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에 따른 생계의 기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위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p> <p>다. 나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는 사용자에게 최종 부담의무가 있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직원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도 없음</p> <p><b>2. 결론</b></p> <p>○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반대의견 있음).</p>
<p>선정이유</p>	<p>○ 종래 복지수당 등 항목을 통해 일률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급 방식을 다소 변경하였 단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판결.</p> <p>○ 반면 소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사용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고,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임금체계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시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인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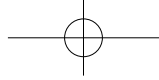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2)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동중단 시간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이 무용한 비용 지출이어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p>선고법원 (사건번호)</p>	<p>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손해배상(기)등</p>
<p>관여법관</p>	<p>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p>
<p>판결요지</p>	<p><b>1. 원심 판결 요지</b></p> <p>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p> <p>○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원고의 아산공장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55분간 가동이 중단된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 간 가동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아산공장의 생산량 저하가 오로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저하된 생산량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인지 특정하기도 곤란하다.</p> <p>○ 원고가 계획한 특정일의 생산차량이 언제나 100% 판매되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시점에 일정한 종류의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되었더라도 일시적으로 재고물량 등을 활용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p> <p>○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아산공장 생산이 저하되었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재고물량 확보와 연장근로 계획 등의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산 저하가 곧바로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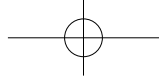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판결요지	<p><b>2. 대법원 판결 요지</b></p> <p><b>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산정방법</b></p> <p>가.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p> <p>나.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p> <p>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 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li> <li>○ 이 사건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는 점</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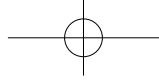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량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조업이 중단된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자동차대수를 산정하면 210대(200분× 1시간당 생산대수 63대 ÷ 60분)가 되는데 위 수치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대수 203대에 근접하는 점, ○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작업시간 대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p> <p>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이 가동중단된 55분 중 그 시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p>
<p>선정이유</p>	<p>○ 쟁의행위로 인해 공장이 멈추면 그 시간 동안 사용자가 지불한 고정비(제세공과금·감가상각비·보험료 등)만큼의 손해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본 기존의 판례(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실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p> <p>○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법파업과 고정비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그 증명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p>

3) 서비스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

<p>선고법원</p>	<p>광주고등법원</p>
<p>선고일</p>	<p>2019. 6. 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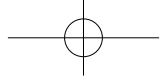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주심판사	재판장 유현중, 류봉근, 김두희
사건번호	2018나23307 임금
판결요지	<p>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심 법원이의 판단한 것을 뒤집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2018년 인권보고서 여성노동권과 모성보호 주요 판례 부분 참고).</p> <p>2심 법원은 ①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 지원자에게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게 실질적인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근로계약서라고 명시한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서비스기관이 아닌 아이돌보미에게 있는 점, ④종속노동의 핵심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 것인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⑤원고들은 자신의 의사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어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동기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⑥활동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점, ⑦아이돌보미 수당이 원고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보면 서비스기관은 중계자로서 상호 연계해 주는 역할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⑨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점, ⑩피고는 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징계나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⑪표준계약서에 아이돌보미가 수행할 업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서비스기관들이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⑫활동일지를 작성할 의무 역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액과 수당산정을 위한 것이지 피고들이 감독할 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⑬신규 아이돌보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법에 따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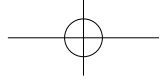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최소한의 교육이며, ⑭서비스 기관이 소속 아이돌보미 상대로 간담회, 원례회를 개최하고 참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하였으나 이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한 근거를 없고 강제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주의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이나 지시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⑮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⑯제공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 등을 받지 않은 점, 아이돌보미에게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광주 YWCA 등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지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p>
<p>선정이유</p>	<p>이번 판결은 아이돌보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했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리와 달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근로제공이 이용자의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다양화된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변화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주들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들의 업무수행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용자들의 민원,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이돌보미들을 관리한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업무의 특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제동을 건 결정에 해당하므로 올해 걸림돌 판결 후보로 선정하였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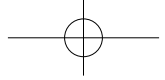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4) 10세 여아 성폭행 학원장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부인하며 강간 부분 무죄 취지로  
선고한 판결

<p>선고법원 (사건번호)</p>	<p>○ 서울고등법원 2019노3172, 2019보노31(병합) 판결</p>
<p>관여법관</p>	<p>○ 한규현(재판장), 권순열, 송민경</p>
<p>판결요지</p>	<p>1. 원심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B'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소주 등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범죄 발생 경위와 범행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주일이 지나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기억 왜곡이 심하지 않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③ 피해자의 나이, 피해 당시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며, ④ 만 10세의 피해자가 34세의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디엔에이(DNA) 검사결과가 나오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으로 징역 8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음.</p> <p>그러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①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사관이 '피고인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에 불과하고,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③ 원심 법정에서 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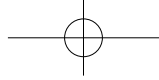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2.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났고, 피해자의 체격이나 옷차림 등이 성인과 유사하여 피해자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키가 160cm, 체중이 59kg으로 만 10세로서는 다소 큰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녹화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 볼 때 만 13세 이상의 나이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을 계속하여 만나던 자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3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였음.</p> <p>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성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어른과 사회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질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p>
<p>선정이유</p>	<p>1.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취약성을 간과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단순의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의 연령이 10세인점, 피해당시 시각이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던 점, 피해장소가 피해자의 소재지로부터 시 경계를 넘어 이동한 피고인의 집이었던 점, 피해 당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른 상황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단순의을</li> <li>-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력과 상황이 고려되는 “위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단순의을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한 셈</li> </ul> <p>2.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범죄 사실 입증 부족의 근거로 드는 등 아동 피해자 감수성 결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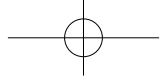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선정이유	<p>- 이 사건의 피해자인 10세 아동이 범정에 출두하여 1년도 더 지난 범죄피해사실을 떠올려 다시 진술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불출석을 감형의 근거로 삼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p> <p><b>3. 법 감정상으로 납득이 어려운 수준으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양형을 선고</b></p> <p>-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단 6월이 많은 3년을 선고한 것은 가해자에 지극히 관대한 결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 채팅앱을 통하여 가출한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어 간음했다는 점에서 비난요소가 높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다는 점에서 심신장애 야기라는 양형기중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양형은 법 감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p> <p><b>4. 결론</b></p> <p>이 사건은 1심에서는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13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만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 항소심은 영상녹화로 촬영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아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의해 술까지 마신 상황에서 피고인이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것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DNA 검사결과가 나온 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임. 최협의설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판결 사안임</p>
------	---

5) 이른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유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노1528 판결
관여법관	○ 홍진표(재판장), 정재현, 김행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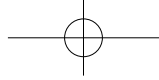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1.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권이적인 군 복무제도에 대한 반감과 반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간 살상·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p> <p>○ 피고인은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국가권력,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권위주의적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인간 살상, 전쟁, 집총 등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음</p> <p>○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 병역거부 사유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p> <p>○ 대학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대가 인간살상·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p> <p>○ 피고인은 과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생각이 있었고, 현재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하는 것은 자신의 평화적 신념과 정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산업기능요원도 기초군사훈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이상, 이는 스스로 양심을 배반하는 것임</p> <p>○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병역거부를 선언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병역의무를 전제로 하는 병역 연기원을 제출하여 징집을 연기하는 쪽을 선택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는 점(사회권, 주거권이 주요업무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적은 양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움</p> <p>2.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p>
<p>선정이유</p>	<p>○ 당사자는 참여연대 활동가로 이른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2017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임. 당사자는 지난 해 헌법소원심판</p>



선정이유	<p>청구를 통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비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엄격한 강도의 심사를 하고 있음</li> <li>○ 해당 판결에서 드러나듯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은 양심이 형성되는 과정, 발현 시기·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반함.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임</li> <li>○ 이처럼 해당 판결은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의 대표적인 판결로서 이를 2019년 결림돌 판결로 추천하고자 함</li> </ul>
------	---

6)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등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및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06 판결
관여법관	권희(재판장), 송헌직, 박태수
판결요지	<p><b>1.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판단: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p> <p>가. 공소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국회서면답변, 국회대비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음</li> </ul> <p>나.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황보고서 1보에 대한 공소사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선내 마지막 카카오톡 발송시간을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서실 보고서의 최초 보고서 발송시간이 10:35으로 위 10:17을 넘은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고송사실과 범행 동기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삭제함</li> </ul> </li> <li>2) 국회서면답변에 대한 판단: 유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은 대서비서실장으로서 문서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보고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작성자로 봄이 타당함</li> </ul> </li> </ol>



판결요지

○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이메일로 보낸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대통령이 20, 30분 단위로 끊임없이 보고서를 전달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음

3) 국회대비 예상 질의응답자료에 대한 판단: 무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된 것임을 요하므로 확정적 의사가 없는 초안, 초고 등은 '문서'라고 볼 수 없음

○ 국회대비 예상 질의응답자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음

4) 양형

○ 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별건 기소로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 피고인 김장수에 대한 판단: 전부 무죄

가. 공소사실

○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국회서면답변, 국회대비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였음

2. 피고인 김장수: 전부 무죄

가. 공소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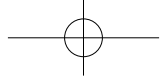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총 9개 문서에 허위에 보고시간을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음  
나. 판단

○ 피고인이 10:15경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고의로 통화내역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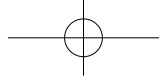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피고인은 2014. 5. 22. 국가안보실장직에서 퇴임함으로써 공무원신분을 상실하였고, 이후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

3. 피고인 김관진: 전부 무죄



<p>판결요지</p>	<p>가. 공소사실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삭선을 긋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공용서류를 손상 또는 효용을 해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시로 지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음</p> <p>나. 판단 ○ 피고인이 적삭선.가필하는 방법으로 위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공무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p> <p>○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p> <p><b>4. 피고인 윤전추: 전부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b></p> <p>가. 공소사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음</p> <p>나. 판단</p> <p>1) 위증죄 성립여부 ○ 피고인은 총 8개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음</p> <p>2) 양형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위증 경위에 지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u>피고인의 위증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u>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p>
<p>선정이유</p>	<p>○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범행에 대한 불충분한 심리(상황보고서1보 수정경위 삭제), 형식적인 판단(국회예상질의응답자료 문서성 부정), 부당한 양형(피고인 김기춘, 윤전추에 대하여)을 통해 사실상 책임자들에 대해 처벌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p> <p>○ 또한 대상판결은 자의적 판단으로 피고인 김장수와 김관진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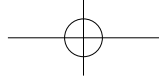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7) 긴급조치 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해 소를 각하한 하급심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041498 손해배상(기)
관여법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판사
판결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는 1976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였고, 재심을 통해 2013년 무죄를 선고받았음.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함.</li> <li>- 법원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관련 소송들은 각하됨.</li> <li>-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보상금 지급에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 운동 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이후 새롭게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음. 원고도 새롭게 이번 소송을 제기함.</li> <li>-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면서, 과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음.</li> </ul>
선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재판소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명백한 일부위헌 결정이므로 재심 청구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해당 재판부는 이를 한정위헌 결정으로 보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음.</li> <li>- 무엇보다, 실제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실제 피해의 보상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li> </ul>
선정이유	청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판결로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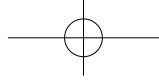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8) 현대자동차 중소협력업체들의 납품중단을 공갈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확정 판결

선고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도2698 판결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노320판결 (원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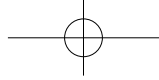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관여법관</p>	<p>대법원 판결 -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주심) 고등법원 판결 - 박준용(재판장), 이영진, 어재원</p>
<p>판결요지</p>	<p>1. 기소 경위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하청업체)인 (주)태광공업 경영자 손영태와 손정우(父子관계)는, 현대자동차 및 1차 협력업체인 (주)서연이화 및 LG하우시스 등의 지속적인 부당 단가인하와 약정했던 물량 미발주 등 하도급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누적된 적자로 회사 부도 위기에 닥치자, 피고인들은 1차 협력업체들에 납품 중단을 통보한 뒤 회사 문을 잠그고,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차라리 회사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함. 그러자 김앤장의 자문 아래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들은 피고인들의 제안대로 (주)태광공업을 인수한 뒤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납품을 재개시켜놓고, 일주일만에 특경법 위반(공갈죄)로 형사 고소함. 대구지검은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여 피고인들을 구속하려 했으나, 구속영장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함.</p> <p>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등이 증인 출석하여, 현대차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과 하도급전속거래구조 아래서의 불공정성을 형사법인 공갈죄로 규율함이 적절한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다수는 현행법상 피고인들에게 유죄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여도,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정함.</p> <p>3.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납품중단행위가 '자동차산업의 상생을 위협한다'는 판시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함.</p> <p>4. 대법원은 원심인 2심 판결의 판시와 양형을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업거래에서의 납품중단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인 특경법 위반(공갈죄)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함으로써 징역4년을 확정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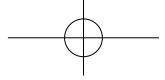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선정이유

1. 현대자동차는 JIS(Just In Sequence) 또는 직서열생산방식이라는 특유의 수직계열화된 하도급전속거래구조를 장기간 운용하고 있음. 이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극단적으로 재고량을 줄이고 하청업체들 사실상 현대차의 사외(社外)생산공장으로 종속시키는 문제가 있음. 그로 인해 한계상황에 몰린 2차 이하 중소납품업체들로서는 기업부도 위기를 앞두고 납품중단을 선언한 뒤 손실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유사 사례로 벌써 수십명의 중소협력업체 경영진들이 특경법 위반(공갈죄) 선고를 받고 투옥 중임.
2.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공급중단 등을 통해 가격협상을 하는 행위를 사법(私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다스리는 유사 판결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임. 특히 기존 유사 판결들이 현대차 중소협력업체들을 형사법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현대자동차라는 특정 기업의 부당한 하청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3. 유사 판결들 중에서도 이 사건 원심판결은, 2018년 이후 국회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하도급전속거래구조에서의 납품중단에 대해 무분별한 공갈죄 적용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와중에도 그러한 노력을 정면으로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원심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정한 집행유예 양형도 뒤집고, 피고인에 징역4년의 중형 선고 후 법정구속을 가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도 무색케 함.
4. 이러한 원심판결(2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수많은 현대차 2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현 체제에 순응하라는 메시지’가 되고 말았음. 다만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근 본안회부 결정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 투옥된 다수의 협력업체 전 경영진들은 그나마 특경법 제3조(공갈죄 부분)의 위헌 가능성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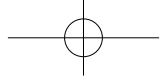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9) 위법한 SNS 대화방 ‘팩스영장’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국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기업의 책임을 부인한 1심 판결

<p>선고법원 (사건번호)</p>	<p>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p>
<p>관여법관</p>	<p>오민석</p>
<p>판결요지</p>	<p><b>1.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  <b>가. 이 사건 영장집행의 위법성</b>  <b>1) 영장 원본 미제시의 위법성</b>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 219조, 제 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압수·수색의 집행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  ○ 이 사건 수사관은 피고 카카오에 대하여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이 사건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  <b>2) 영장 집행 미통지의 위법성</b>  ○ 이 사건 영장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제2항, 제13조의 3 제 1항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30일이 지난 후에 통지가 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b>3) 영장 집행의 범위 일탈의 위법성</b>  ○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b>4) 참여권 미보장의 위법성</b>  ○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압수자인 피의자 그 변호인 또는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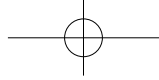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p>판결요지</p>	<p>고 해석함이 타당함</p> <p>○ 따라서 피의자도 아닌 원고들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거나 그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p> <p><b>나. 손해배상의 범위</b></p> <p>○ 수사기관의 위와 같이 잘못된 실무관행은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함</p> <p><b>2. 피고 카카오의 원고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p> <p>○ 피고 카카오가 원고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통신망법 제 24조의 2 제 1항을 위반한 행위임</p> <p>○ 다만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의하여 원고 정진우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p> <p><b>3.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b></p> <p>○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압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p> <p><b>4. 결론</b></p> <p>○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인용,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카카오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카카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p>
<p>선정이유</p>	<p>○ SNS대화방 압수수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함</p> <p>○ 위 판결은 영장집행 자체의 위법성은 긍정하였으나, 영장 집행을 통지 않은 점, 영장의 범위를 일탈한 점, 참여권을 미보장한 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음</p> <p>○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액수를 현저히 낮은 액수로 측정하였음</p> <p>○ 나아가 피고 카카오에게 최소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기업의 책임을 부인하였다는 점, 원고 A 외 나머지 원고들의 사진, 전화번호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잘못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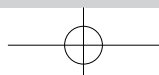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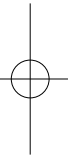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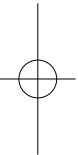
#### 4. 그 밖의 디딤돌 후보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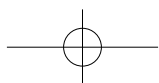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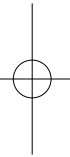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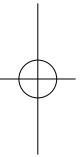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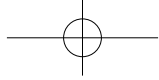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선정위원회에서 10대 디딤돌 판결로는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2018년 선정 최악의 결림돌 판결의 상급심으로서, 원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은 디딤돌 후보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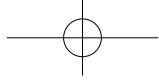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재판부	홍동기(재판장), 오현규, 성언주
	판결취지	성인지 감수성 토대로 업무상 위력 인정
2	사건번호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재판부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주심)
	판결취지	위 1번 판결의 상고심으로 항소심의 유죄 판결 확정
3	사건번호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판결
	재판부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주심), 민유숙, 김재형
	판결취지	국정농단 관련 삼성그룹 이재용의 뇌물공여 인정



[제3부]  
집중조명







## 집중조명 1

#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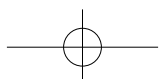
### 집필

[기조발제] 실종된 검찰개혁, 법원개혁 : 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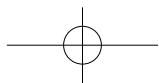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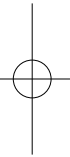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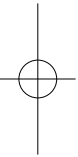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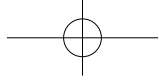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토론1] 법원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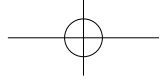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토론2] 검찰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토론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검찰개혁 :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기초발제 ]

# 실종된 검찰개혁, 법원개혁

- 인권보고대회 -  
2019.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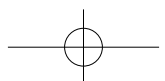
김 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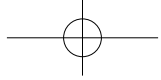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  
(그래프 김정렬)

## 목 차

1. 검찰의 새로운 얼굴
2. 검찰개혁
3. 경찰개혁
4. 국정원개혁
5. 반부패개혁
6. 사법개혁 과제
7. 사법개혁 실종
8. 개혁의 철학과 원칙
9. 개혁 리더십

[제3부] 집중조명 1 :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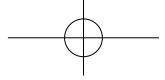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1. 검찰의 새로운 얼굴

### 1. 막후의 실력자

- 무대 커튼 오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 커튼이 올라가자 막후의 실력자 등장
- 무대의 앞면 : 대통령, 장관 등
- 무대의 뒷면 : 정치는 검찰, 경제는 재벌
- 조국 사태 때 충격적으로 등장
- 과거에는 일부 사람만이 보았던 사실
- 모든 국민이 생중계방송 경험

### 2. 검찰의 정치지향성

- 검찰과 정치의 왜곡된 관계
- 1단계 : 정치권력의 하수인
- 2단계 : 정치권력과 권력나누기 - 국정농단 사태
- 3단계 : 정치권력 구성권. 내각 구성권 행사
- 정치검찰의 최종적인 형태
- 대통령 인사권 침해, 장관 고르기 경향
- 검찰의 권한 분산 견제 장치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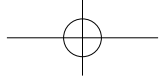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정치검찰과 검찰국가

- 일본 군국주의, 육군해군대신(장관)을 현역으로
-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부 장관 불임명 -> 내각 구성 실패 -> 총리 사임 -> 텐노 다시 총리 지명. 지금으로 말하면 총선 실시
- 군부는 내각 장악, 항상적 쿠데타 상황
- 군국주의 완성, 최종형태는 도조 히데키 내각
- 군부 개입을 막으니 검찰이 개입하는 위험성
- 검찰의 문민화 과제

## 정치검찰은 부패검찰로 연결

- 조국 사태 전까지는 2단계
- 정치권력과 함께 국가 공동경영
- 지위와 부를 함께 공유. 엘리트 부패 카르텔
-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전관예우 부패구조 완성
- 부패 검사 등장 : 홍만표, 진경준
- 3단계는 검찰 자체 부패는 줄어들 수 있음
- 검찰중심의 사회개혁 요구 등장 : 검찰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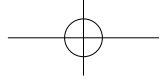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3. 반인권검찰

- 반인권이라기 보다는 인권에 둔감
- 조국 수사에서 드러난 잔인성, 인격 말살 측면
- 수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 수사 방법에는 제안이 있음
- 문명국가, 인권국가 수준에 맞는 수사 필요
- 무죄추정의 원칙, 프라이버시, 존엄성 존중 필요
- 절제 없고 가혹한 수사

### 수사방법 개혁

- 수사방법의 개혁이라는 과제 제기
- 제도개혁이 되면 수사방법 개혁은 뒤따라온다
- 민주정부 효과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 제도개혁과 함께 수사방법 개혁 우선
- 포토라인, 밤샘수사, 별건수사 폐지
- 압수수색, 구속 자제 필요
-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개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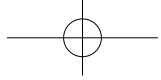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2. 검찰 개혁 : 수사권 기소권 분리

###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

- 검찰 권력은 형사사법권한 독점에서 비롯
- 수사권, 기소권 보유가 검찰권력화 출발점
- 검사 영장신청 독점 :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 강화되는 경찰권한은 경찰개혁으로 해결
- 검사장직선제 등은 부차적 과제
- 준사법기관론, 객관의무론의 극복
-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입법 추진중

### 수사권 기소권 조정 필요성

- 첫째, 검찰의 본질적 문제 포착
- 국정농단 사태, 정치검찰의 뿌리
- 근본적인 개혁, 공권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둘째, 역사적 과제 해결
-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관계
- 제정 형사소송법부터 예정
- 역할분담과 효율성



## 2018.6.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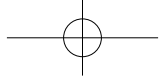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
-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 검사 송치후 보완수사 요구
- 경찰, 영장심의위원회 이의제기
- 검사 직접 수사 한정 : 경찰, 공수처 검사, 부패, 경제, 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 등
- 검찰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경찰 이송
- 경찰 수사과정 인권옹호 제도 방안 강구 시행

### <1>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살펴보기

② **바** 채이배 + **민** 백혜련 법안 =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 개정 검찰은 **특정(부패/경제/선거 등)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모든 사건에 관해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정 경찰은 모든 범죄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일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검찰의 수사 간섭으로부터 독립성 강화.**



### **의문 1 확대되는 경찰 권한 통제방법**

- 경찰 자체의 통제 :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 민생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교통) 자치경찰
- 경찰위원회 실질화 : 예산, 계획, 집행, 평가 담당

### **의문 2 경찰의 인권침해 견제**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의문 3 정경유착, 거악, 전문범죄 수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 **의문 4 경찰의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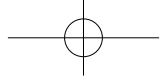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허구. 논리가 아닌 감정

## **2. 검찰 개혁 : 공수처 신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특별검사 30-50명 규모
- 인적 대상 :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
- 물적 대상 : 권한남용, 부패범죄(뇌물, 횡령, 배임)
- 독립 기구 또는 반부패특별위원회 산하 기구
- 반부패기구이면서 검찰권한 견제의 이중적 지위
- 상설, 전문 기구.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 기존 대검 중수부, 특검의 한계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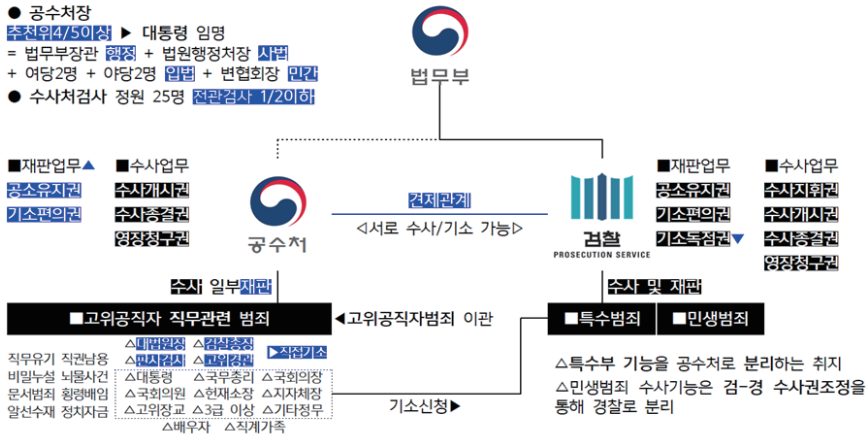
## <2> 공수처 설치 법안 살펴보기

### ② 민 백혜련 법안 =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 ● 공수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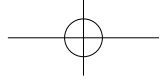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추천위(4/50인)** ▶ 대통령 임명  
= 법무부장관 **원칙** + 법원행정처장 **사법**  
+ 여당2명 + 야당2명 **일법** + 변협회장 **민간**

● 수사처검사 정원 25명 **전관검사 1/2이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

- 주목적 :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수사 및 기소
- 참여정부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법안
- 당시 기소권 無. 검찰개혁 요구 전면화 전
- 엘리트 부패 카르텔에 대한 대응기구
- 국가청렴위원회 산하가 가장 바람직
- 수사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서는 안됨
- 부목적 :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 부패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



## 2. 검찰 개혁 : 법무부 탈검찰

### 법무부 - 국가법무행정의 중심

- 검찰, 인권, 출입국외국인, 범죄예방, 교정
- 검찰 견제와 국가법무행정 담당
- 고위직을 검사 아닌 전문가 임용(장관 포함)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문서로, 공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 중요 보직 개방 또는 내부 승진
- 검찰개혁의 세 번째 중요한 과제

## 2. 검찰 개혁 : 과거사 정리

### 긴급조치 판결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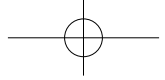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검사의 집단 재심으로 해결 중

### 과거사 사건과 일반 사건

- 국가 진상조사 후 재심, 검찰 적극적 역할 필요

### 법무부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 활동

- 과거 인권침해 사건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
- 대국민 사과, 회복 대책
- 과거사 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



## 2. 검찰 개혁 :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국민주권주의, 민주적 정당성
- 민주주의 국가, 민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
- 재판 통제로 법원 민주화

### 국민참여재판 개혁과제

- 더 많은 사건 : 연 5천건 목표(현재는 연 3백건)
- 배심원 수 증가 및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여
- 평결의 만장일치 혹은 가중 다수결
- 배심원 사실인정에 대한 상소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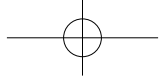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2. 검찰 개혁 : 형사소송법

### 재정신청 확대

- 검사의 불기소권한 통제
- 모든 범죄 대상, 고소인, 고발인 인정 필요
- 공소유지 변호사 부활

### 피의자신문조서 개혁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
- 내용인정 요건 강화로 경찰과 동일하게
- 이중 수사 폐단, 검사 직접 수사 폐단 방지



## 2. 검찰 개혁 : 현재 상태

### 구체적인 성과 미흡

- 법제화 성과 미흡, 법무부 탈검찰화 시행
- 박상기 장관의 실기
- 인권친화적 수사 개혁은 초기에 가능했음
- 법안은 의원입법, 정부는 의견 제시
- 자치경찰제 진행 등 속도의 불일치
- 적폐청산의 주역이 된 검찰
- 세월호 수사에 특수부 검사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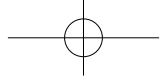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검찰총장 발표

- 특별수사부 폐지, 공개소환 폐지
- 심야수사 제한, 별건 수사 금지, 외부파견 철수
- 인권위원회 구성, 공보전담관 신설

### 법무부장관 발표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확대
-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 인권수사에 초점, 리더십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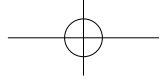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새로운 리더십 마련 필요

- 조국 사태로 리더십 위기
- 합의되지 않은 개혁방안들 제시로 혼란
- 장관과 총장이 싸워서 안된다
- 장관과 검찰의 절제와 겸손이 필요
-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 국회의 무능력과 야당의 반대
- 핵심 과제 2-3개 집중, 성과 반드시 내야
- 신속한 장관의 임명 필요

## 3. 경찰 개혁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의 의의

- 경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 지역마다 다른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
- 지방자치 완성 :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
-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민통제 기초
-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제도적, 실무적 기초
- 실제 시행과 시민의 신뢰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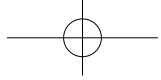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자치경찰제 형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존
- 국가경찰 : 광역범죄, 조직, 선거, 테러, 마약
- 국가경찰 안보국 :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이관
- 자치경찰은 광역단위로 수사권 행사
- 민생(살인, 강도, 절도, 폭력)범죄, 교통범죄
-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의 통제

## 3. 경찰 개혁 : 경찰위원회

### 경찰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 민주적 독립적 운영
- 구체적 사건 지시는 불가
- 정부대표 위원장, 위원에는 경찰공무원 포함
- 사무처 신설, 실질적 운영, 감찰 및 징계 권한
- 경찰서 단위는 자문기구



### 3. 경찰 개혁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개정

- 경찰청장, 차장의 개방인사 : 인재 영입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동등 대우

#### 경찰대 개혁

- 경찰 입직의 단순화, 경찰간부의 획일화 방지
- 경찰은 군이 아니라 행정가

#### 인권친화적 개혁, 전문화, 내부 혁신

### 4. 국정원 개혁

#### 해외 안전정보원 명칭 변경

#### 국내정보수집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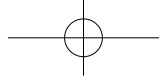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 재발방지

#### 수사 및 집행 기능 삭제

- 내란, 외환, 군사기밀, 국가보안법 수사 금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재발방지

#### 국회 상임정보위원회 감시 강화

- 상임정보위원회 내 상설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 5. 반부패 개혁

### 부패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 연결성 확대, 신기술 도입, 일자리 부족
- 대형 사고, 경쟁 격화, 정보 공개, 불평등 확대
- 대중의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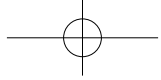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개혁은 적폐청산으로 시작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부패 백화점
- 반부패 개혁은 민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 신속한 정리 필요, 미래지향적인 정의 수립

### 청렴국가 대한민국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독립 필요
-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 설치
- 공수처 설치에 권익위 활동 절대 필요
- 권익위 관심과 활동 없음
-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 생활적폐가 아닌 엘리트 부패카르텔 대상
- 정당의 혁신, 정치개혁 필수





## 6. 사법개혁 5대 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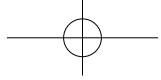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촛불혁명의 요구 : 국민주권주의 시대 개막
-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하는 국민참여재판
- 법무부와 사법부의 법률 위반
- 국민참여재판 법률 : 최종적인 형태 결정을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구성
- 박근혜 법무부 개악된 법률안 제출, 자동 폐기
- 대법원과 법무부의 직무유기 상태

## 6. 사법개혁 5대 과제 2

### 사법부 과거사 정리

- 국가적 과제가 된 과거사 정리
- 검찰과거사위원회 가동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 과거사는 법원, 법관을 짓누른다
  - :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사
  - : 전수안 전대법관의 부장판사 시절 기고문
- 과거사 정리를 통한 미래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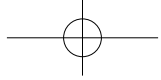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사법부 과거사 정리

- 과거사 정리 : 명예 인권 회복, 해원, 법적 확인
- 과거사 정리의 출발점
- 사법부의 변명 : 무책임론 또는 피해자론
- 판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는 없다
- 법원의 과거사 정리는 중단
- 긴급조치 위헌 판결 : 국정농단 사태
- 개별적 해결은 후퇴의 가능성 존재

## 사법부 과거사 정리

- 법원의 과거사 정리는 중단된 상태
- 수집한 과거사 사건 판결 6419건, 피해자 8782
- 2007.1. 진실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 사법 과거사 논쟁 종식을 위한 제언(백서) 검토
- 법원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 필요
- 대표적인 사건 과거사 정리 : 이미 검토
- 원인 조사 및 개혁 / 과거사 기억과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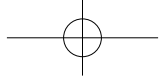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6. 사법개혁 5대 과제 3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단순하지만 어려운 과제
- 관료주의, 다양화에 대한 무지가 장애
- 형식적 다양성이 아닌 실질적 다양성 필요
- 비개혁적 인사와 다양성
- 법원 외부 인사 필요. 개혁적인 법관의 한계
- 다양성은 균형이 아니다
- 최근 좋은 판결은 구성 다양화의 결과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다양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
- 다양한 경험과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가치관
- 새로운 대법관 후보 발굴 필요
- 문을 열고 들어가는가, 닫고 들어가는가
- 형식만 구성의 다양화 피해야
- 판례와 법률해석을 바꾸는 다양화
- 미란다 판결도 5:4였다.
- 대법관 증원론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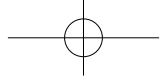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6. 사법개혁 5대 과제 4

### 법원행정 개혁

- 사법행정과 사법부 독립은 구분
- 판사 임명이 대법원장의 몫인 나라는 우리뿐
- 사법부는 법무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 사법행정은 소극성이 특징 : 사법부의 속성
- 행정과 재판의 결합 현상
- 관료주의의 문제 : 폐쇄성, 수직성, 서열의식, 전 관예우, 하급심 부실, 절차 무시 결과 위주 판결

### 법원행정 개혁

- 법원행정처 분리와 축소
- 사법평의회 구상 :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 문제
- 대법원장 사법행정 권한 축소  
개헌안 - 대법관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 법원 인사 이원화,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 대법원장 인사 추천권 삭제 : 그런데 확대 경향
- 하급심 강화와 전문법원 설치



## 6. 사법개혁 5대 과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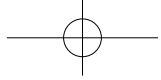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사법의 지방분권

- 지방분권 당위가 아닌 현실
- 재판은 중앙집권, 행정은 지방분권
- 중앙집권적 사법제도, 개방적 사회시스템
-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하는 의미
- 지역법관제, 지방계속근무법관제
- 반대 주장 : 토호세력과 결탁한 부패문제
- 연구 필요 : 장기과제로 설정이 중요

## 6. 제도개혁 4대 과제 1

### 공정성 강화

- 징벌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불공정성, 불평등성 증가
- 자본의 횡포, 갑질문화 일상화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중
- 사개추위, 법률안과 정책보고서 채택
- 가슴기 살균제 사건, 침대 매트 사건 대응 가능
- 갑질 문화가 지속되면 기득권층이 계급이 된다.



## 6. 제도개혁 4대 과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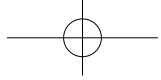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법치주의 제고

- 행정부 법치주의 제고 : 법무담당관 제도
- 기업 법치주의 제고 : 준법관리인제도(금융회사)  
준법지원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 입법부 법치주의 제고 : 보좌관, 사무처 등
-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방지 대책
- 국가권력의 남용 통제 대책
- 사개추위에서 장기과제로 연구

## 6. 제도개혁 4대 과제 3

### 국민주권주의 확대

- 국민소송제도 : 예산 통제 목적  
: 사개추위, 법률안 마련  
: 주민소송제도는 시행 중, 확대 필요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확대
- 개헌안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 전문가와 실무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됨
- 시민은 쉼 권리가 있다



## 6. 제도개혁 4대 과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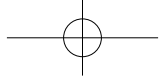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군 사법제도 개혁

- 사개추위, 개혁안 완성, 국회 통과 실패
-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 국정과제에서는 축소
-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 군도 법치주의 적용
- 개헌안 : 평시 군사법원 폐지까지 주장
- 2018년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 마련
- 개헌이 안되더라도 군사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및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 필요

## 7. 사법개혁 실종

### 기대감을 갖게 한 출발

- 촛불혁명이 만든 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서열 파괴와 법원 개혁의 상징
-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사건 발견
- 사법농단 사태
- 법원조직 폐쇄성 극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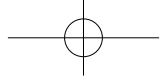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성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진전

-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8명 대법관
- 구성의 다양화 실질적 진전
- 좋은 판결, 인권지향적 판결의 토대
- 사회 쟁점을 법률의 세계에서 정리
- 고등법원보다 다양한 대법원
- 향후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성 제기

## [성과] 주요 대법원 판결

-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 부마항쟁 계엄령 위반 재심사건
-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
-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판결
-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 좋은 판결은 대법원의 존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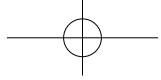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개혁 없는 법원

- 가장 핵심적인 법원행정 개혁 지체
- 자체 개혁의 실패
- 사법발전위원회 이후 내부 마찰 지속
- 외부의 참여 기회 보장
-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법원의 몫
-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사건은 재판 중
- 개혁에 반대하는 대법관들

## 관심 없는 행정부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으로 사법개혁 끝?
- 사상 첫 재판거래 사건에 침묵
-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법무부 무관심
- 박상기 장관의 실기
- 사법개혁 과제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국민참여 재판, 징벌배상, 집단소송, 국민소송 등 지체
- 사법개혁에 침묵하는 민주정부는 처음
- 행정부 차원의 사법개혁 계획 부재



## 낮은 생산성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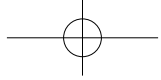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법률로 완성되는 사법개혁
- 국회의 낮은 생산성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성과 없는 종결
- 사법개혁 주도할 능력과 관심 부재

## 시민단체의 관심 부족

-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이외의 대응 없음
- 1인 시위, 영장담당 판사 고발, 탄핵 움직임
- 지속적인 관심 없음

## 사법개혁 실종의 원인

- 도그마가 된 사법부 독립
- 사법개혁 역사에 대한 무지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경험에서 배워야  
: 민주정부는 예외 없이 사법개혁 시도
- 사법개혁을 추진할 법원 리더십 부재
- 행정부의 무관심 : 국정과제와 사법개혁
- 촛불혁명 망각 : 반부패, 민주주의, 공정성  
: 적폐청산으로 모아지는 촛불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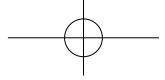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축소지향적인 사법개혁

- 사법부 독립 이데올로기 때문에
- 사법부는 외부를 멀리하고
- 행정부는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을 하지 않고
- 시민단체도 사법부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부담
- 사법부 내부 추진은 개혁세력과 리더십 부족
-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위기의식 실종
- 사법부 내부, 자체적인 개혁의 한계

## 사법부 독립의 도그마화

-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 독점으로 파악
- 민주세력이 사법부 독립 주장하고 실천
- 재판 독립만이 아니라 사법행정 독립으로 확대
- 대법원장의 법관 임용권 등 사법행정권 독점
- 사법부의 행정 대부분은 헌법과 법률로 규정
- 행정부는 법률제출권, 입법부는 입법권으로 사법행정을 결정
-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결정
- 현실은 법관이 법원 행정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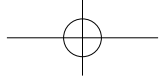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사법부 독립은 수단적 가치

-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같은 말
- 재판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 위해 존재
- 재판의 공정성은 당사자의 대등함을 위한 것
- 당사자의 대등함은 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횡포를 방지
- 권력의 횡포 방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호
-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수단
- 현재는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를 위한 원리로

##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

- 사법부의 독립 원리도 중요하지만
-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
- 국가의 방향에 따른 재판 절차, 재판 방법, 양형 등을 수정하고 교정해야 함
- 다른 국가기관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협조해야 하는 관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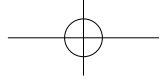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공격용 무기가 된 사법부 독립

- 사법부 독립은 수비형 원리, 소극성과 수동성
- 정치권력과 기득권층의 부당 개입, 간섭에 대항
- 일반 시민, 학자, 실무자들의 비판 허용
- 재판과 판결의 공개
- 사법개혁 역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함께
- 사법부 독립의 현실은 자본, 정치권력, 언론, 관료, 법조, 지식인의 야합
- 막무가내 판결, 시민 무시 재판 종종 발생

## 고위직 법관들의 임명직 진출

-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 국무총리의 경험 : 이회창, 김황식
- 대법원장의 제청권 : 대법관
- 대법원장 지명권 :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 불행히도 줄어들지 않고 확대 중
-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관료법관이라니!
- 명예로운 고립은 어디에 있는가



## 사법부 독립 원리의 도그마 결과

- 사법개혁 실종과 법원내부 개혁으로 축소
- 사법부 관료주의 심화 : 법원행정처 강화
- 개혁 반대세력의 논리
- 수사도 안 해보고 검찰개혁?
- 재판도 안 해보고 사법개혁?
- 사법부의 저항, 법관의 저항에 무기로 작용
- 사법부에 만연한 엘리트주의, 무오류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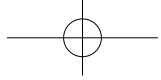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 8. 개혁의 철학과 원칙

### 시민 역량의 성숙

- 촛불로 드러난 시민의 민주역량 : 형식과 내용
- 독점자본주의 통제, 민주주의 실질화
- 복종으로 질서, 저항으로 자유, 참여로 민주

### 국민주권주의 원리

- 시민주체성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으로 구체화
- 직접민주주의를 국가, 지방, 권력기관 단위로 구현
- 높아지는 전문가와 실무가의 역할



## 권력기관 개혁 3원칙 : 분산, 견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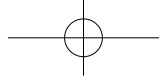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집중된 권한의 분산
- 분산된 권한의 상호 견제
- 공개와 참여, 조직화된 시민 필요

## 인권 친화적 개혁

-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하고 보존
- 인권친화적인 전통, 윤리, 신뢰
-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지금 평등보다는 자유
- 결과의 평등보다는 과정의 공정 중요

##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 개혁

- 분권적 개혁은 항상 미흡
- 자율적 개혁은 조직이기주의 작동
- 권력기관 개혁, 형사사법체제 개혁은 모두 관련
- 종합적인 개혁 계획의 수립과 반포
-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의 리더십, 의지
- 모든 부처의 협력
- 간부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잘못하면 검찰 중심의 검찰개혁, 법원 중심의 사법개혁이 된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혁

- 산업화 성공의 자부심 : 장인정신
- 민주화 성공의 자부심 : 시민의 힘
- 위험사회의 등장 : 초연결성
- 공동체 붕괴와 갈등의 전면화

##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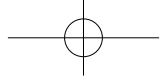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상호 평등, 협력하는 제도와 문화
- 기관간 사소한 갈등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

## 9. 개혁 리더십

### 개혁 성공의 3대 요소

- (1) 시대가 개혁을 요구하는가
  - 시대정신과 일치하는 개혁, 특히 촛불혁명
- (2) 주체적 역량이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가
  - 개혁 주체의 리더십, 책임감, 의지, 소통
- (3)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계획이 없다면 남 탓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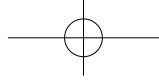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늦출 수 없는 개혁

- 국민과의 약속
- 시간은 개혁세력의 편이 아니다
- 늦어지는 개혁은 개혁 피로감 초래
- 다른 개혁을 늦추는 핵심 개혁의 지체
- 공직자들의 사기, 국민들의 불안감
-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돼
- 핵심적인 개혁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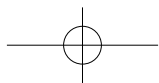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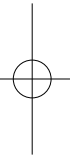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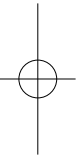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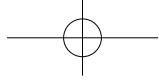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 개혁의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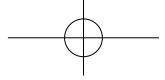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개혁리더십은 문제 해결사
-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갈등을 해결, 완화
- 조직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국가, 동아시아, 세계적 관점, 보편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
- 잘못된 개혁은 기존의 불평등을 합법화시킴
- 절박한 리더십의 복원

**우리는 불평등, 불공정, 차별을 법, 권력, 심지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희





## [ 토론 1 ]

# 법원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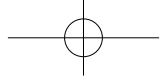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1.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가. 일명 사법농단사태 이후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 3.부터 12.까지 운영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즉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들의 관료화, 법원의 사법행정 독점으로 인한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위한 사법행정회의 신설, 판사의 탈관료화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서열식 인사구조의 해체, 특수보직의 인사의 축소(고등부장폐지, 법원의 이원화, 대등재판부) 등을 권고하였다.

#### 나. 건의문(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중심으로)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 I.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

1. (다수의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의 기관 및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법행정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소속 및 구성

1.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법원에 둡니다.**
2. 사법행정회의의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함이 바람직합니다. **법관 위원 중 일정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합니다.
3. 사법행정회의는 **산하에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III. 법관인사 기구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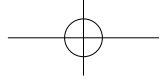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판사의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관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IV.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1.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 조속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 V.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1.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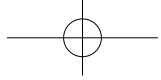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2.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 2.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이하 추진단)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대해, 비판의 대상인 행정처가 직접 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은 비판 대상의 '셀프개혁'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고 대내외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개혁방안 작업을 위하여 외부(변호사)와 판사(판사회의 추천)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중 다수의견에 따라 사법행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하였다. 추진단은 1개월간의 집중 활동을 통해 사법행정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그 구성도 법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법관과 동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행정회의를 구성하고, 법관위원의 임명도 대법원장이 독점하지 않도록 성안하였다. 또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사법행정회의에서 판사의 보직인사권도 갖도록 하였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를 사무처로 개편하면서 법관이 아닌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 3. 대법원장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는 당초를 약속을 어기고, 2018. 12.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면서도 기구의 성격을 심의·의결기구로 축소하여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법원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원의 구성 역시 추진단안에서 후퇴하여 법관위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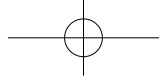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가 외부위원보다 많고 법관위원 선정도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개정안이었다. 보직인사권도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를 수차례 공언하였음에도 개정안에서 법원사무처에 법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농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판사들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다(2019. 8. 말 국회 사개특위가 종료되었지만 법원개혁 법안에 대해 다루지 못함).

#### 4.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권한분산과 수평적 회의체’ 필요성을 들어 2019. 9. 9.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사법행정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이 법관이고 법관위원 중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고법, 지법 부장판사급)이라는 점, 외부위원마저 그 선출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대법원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분산을 위한 기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상설기구가 아닌 분기별 한 차례 운영으로 실질적인 기구가 되기는 어렵다.

#### 5. 사법농단의 과거 청산 의지 부족

2018. 12. 사법행정권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징계청구된 법관 13명 중 8명(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고, 2019. 3. 김찰이 수사 마무리 결과 비위 연루 법관 66명에 대해 검찰로부터 법원행정처로 통보가 있었으며, 그 중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가 청구되었다. 대법원은 비위 통보 당시 32명이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명하였으나, 비위 연루자 66명의 명단과 혐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해 일부 논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명도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비위 연루 판사는 법정에서 여전히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히 비위 연루 판사가 참여연대의 사법농단 정보공개청구소송 담당 판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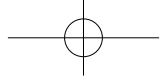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6. 결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이 넘었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개혁, 법원행정의 탈관사화 등 법원행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우선, 사법농단의 수행자들에 대한 처벌은 커녕 죄상도 밝히지 않고 있고, 법원개혁의 형식적 구호는 난무한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고 대법원장의 선의에 기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지금의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사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정도로 제도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사법농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의 끝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혁명적 전환 수준의 법원개혁이지, 겨우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아니다. 등을 떠밀어서라도 멀리뛰기를 하게 해야 할 때이다.





[ 토론 2 ]

## 검찰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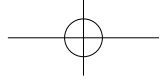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 1.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례가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권력화되고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 따라서 과도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검찰 권한 축소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한편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는 적절한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검찰권(수사, 기소, 형집행)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견제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견제수단이 국회에 계류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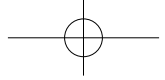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이고, 현행법상 마련된 제도가 법무부의 검찰권, 인사,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등도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

## 2. 검찰개혁의 주체

검찰개혁은 검찰의 영리하고, 강력한 저항으로 번번히 실패해 왔다. 그에 반해 검찰개혁의 주체는 불분명하거나 힘이 분산되기 일췌였다.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가 있어야 하므로 검찰개혁의 주체에서 국민, 시민사회가 빠질 수 없다. 다행스러운 일은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졌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을 통해 검찰의 민낯을 목격한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주체가 자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실제 검찰개혁을 추진할 힘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나서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혁은 국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행정입법과 권한 행사 및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검찰개혁은 방향과 의지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주체를 논할 때 검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검찰개혁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검찰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그동안 자발적 개혁이 실패한 만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점과 어느 권력기관도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일종의 제척사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국회 역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검찰을 개혁의 주체로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개혁을 더욱 더디고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만 검찰의 현실을 모르고 개혁을 논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주요 권고 및 법무부의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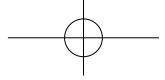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가. 셀프감찰 폐지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감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하위 규정인 법무부감찰규정(법무부훈령)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2차적 감찰로 규정하고 사실상 감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검사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대검찰청의 셀프감찰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해 왔고 그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감찰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감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는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개혁안을 발표해 권고를 축소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규정한 법무부감찰규정은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대통령령)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두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직접수사 축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외형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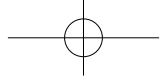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접수사 부서가 오히려 확대되었고,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의 수사 조직 직제가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반 형사부, 공판부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부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할 수 있도록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등 관련 제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향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개혁으로 나아가는데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명칭 변경하고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겨두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직제 기구로 특수부 등을 변칙 운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배당과 내부파견 문제를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사건배당 기준 마련

현행 검찰사건배당은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검 예규인 사건배당지침(비공개)에 의해 결정되어 투명성이 떨어지고, 그마저도 검사장이 자의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제도가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상명하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지수사 등 직접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 일반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직제 특수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배당절차를 개혁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각급 검찰청에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의 기준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 직급별 대표와 외부인이 참여하여 각급 검찰청의 현실에 맞는 사건배당 기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매우 획기적인 개혁안이라는 반응,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19. 11. 11. 현재까지 법무부는 해당 권고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 라. 셀프인사 방지(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미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탈검찰화 이행이 더딘 상황이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들 인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청법상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사들이 검사의 인사를 스스로 하고 있어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셀프인사를 방지하며, 과도한 상명하복과 줄세우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즉시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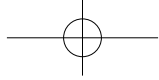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이러한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2019. 11. 11. 현재까지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 마. 기타 권고 및 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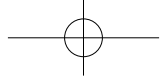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위와 같은 권고 이외에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대검찰청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4. 검찰개혁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검찰개혁은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실무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에서 오는 국민들의 기본권보장도 매우 중요하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변호사가 할 수 있다. 이미 수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다뤘었고, 그러한 다툼이 법원의 판례가 되었으며, 검찰의 규정을 개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가 피의자 조사 시 수시로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메모권을 보장하는 것, 변호인의 위치가 피의자 바로 옆자리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검찰개혁은 실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현장에서 보고 듣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 토론 3 ]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검찰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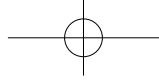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임지봉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I. 서론

국민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열기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낳았고, 오랜 세월동안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목도한 국민들이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소위 ‘김명수 코트’를 이끈 지도 벌써 2주년이 지났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의 새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을 합치면, 이제 ‘김명수 코트’에는 13명의 대법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의 ‘김명수 코트’를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및 그 원인



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법행정개혁의 측면에서 법원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김인회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보완적 토론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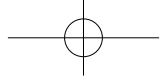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II. 검찰개혁

### 1. 법무부발 검찰개혁

이러한 국민들의 일관된 검찰개혁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30일의 청와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에 검찰은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관용차량 지급 중단,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의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의 자체개혁안에 법무부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무부 검찰개혁안은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축소하고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범위도 구체화하였으며, 특수부 축소로 인한 인원을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론 검찰의 자체개혁안에서 제안되었던 공개소환의 폐지, 심야수사의 폐지 등도 담고,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시간 수사, 별건 수사, 수사 기간의 장기화도 폐지하였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도 강화하고 실질화해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내용을 보고 받고 의결만 하던 데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한 마디로 인지수사와 직접수사를 통해 기소를 위한 무리한 과잉수사 논란을 낳았던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여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이며, 심야수사, 장시간 수사,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금지해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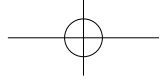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검찰청 예규 등을 개정해 실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정권이 바뀌어 이런 행정명령들을 개정하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이 원위치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법안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안의 통과가 핵심이라고 믿는다.

## 2.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도입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수처가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 그 도입의 핵심취지이다. 특히 공수처법안인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검사를 공수처의 기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나 기소단계에서의 검사의 권한 남용을 공수처가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검사라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의 감시자’로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여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 중 권한이 남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예를 들어 <PD수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산 수입 관련한 고위공직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이 서둘러 기소를 했다.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지만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 안 된다는 건 법대 1학년생도 아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인 거고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거고 진실인지 허위인지 체크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걸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명예훼손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왜 검찰은 기소를 했을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의 남용도 문제지만 검찰의 권한 오용, 즉 혐의가 있지만 덮는 게 더 문제다. 사실 덮는 것은 밖에서 잘 알 수도 없다. 특히 덮어주기식의 검찰권 오용은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혹은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건에서 ‘제식구 감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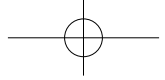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기식 수사'로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다. 경찰이 특수 강간으로 영상 확보해서 수사 중이었는데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라고 해서 송치했더니 검찰이 무혐의로 서둘러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같은 검찰이라고 덮어줬다는 의혹을 샀다. 최근 mbc <PD수첩>의 보도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일반인의 범죄 기소율이 40%인데 비해 검사의 범죄 기소율은 0.13%에 그친다고 한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일까? 검사는 그만큼 청빈하고 법 위반을 안 해서 그럴까? 누가 봐도 40%와 0.13%는 너무 큰 차이이다. 이것은 피의자 수사 후에 이루어지는 기소와 관련해 검사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불기소를 많이 했다는 것을 통계가 그대로 웅변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에 의한 과잉 수사도 막지만 덮어주기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이제껏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건에 있어서도 덮어주기식의 수사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많다.

공수처는 이러한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아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것이 공수처에 대한 국회 논의의 시작이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여 차례나 제출되었다. 23년 동안 논의했으면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법 제정을 통한 공수처 도입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수처 도입이 성공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꼭 공수처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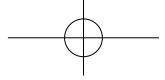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첫째,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공수처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하지 못하면 지금 일부 야당이 공수처 도입의 반대근거로 제시하듯이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공수처법안은 공통적으로 공수처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하고 있다. 즉,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조삼륜의 대표 격으



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면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다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게 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장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수처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이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면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제2의 검찰'이 되어 공수처 도입의 핵심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런 면에서 백혜련 의원안이 검사 출신의 공수처 검사가 전체 공수처 검사의 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한 조항은 공수처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두 공수처법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이외에 25명 정도의 공수처 검사, 30명에서 40명 정도의 공수처 수사관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57명에서 67명 정도의 인력만 가지는 기관이 된다. 그리고 공수처 구성원들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슈퍼공수처'가 될 수 없으며 2천3백 명 검사로 구성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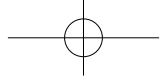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III. 법원개혁

#### 1. 법원의 '셀프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법원의 '셀프 개혁'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법원 내부 법관들 중에는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인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고 아직도 사법관료주의적 권위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법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사법농단 제3차 조사결과 발표 다음 날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까지 고려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후 법원 내·외부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그 결과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서 후퇴한 '수사 협조'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주목할 점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법원 내부의 입장이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 노·소장 판사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도 담화문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고위법관들의 인식은 이번 사태로 충격과 실망을 느끼는 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이미 재판거래에 관한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는 상당 부분 무너졌다. 또다시 더 무너질 신뢰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 직후에 같은 날 있었던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 또한 국민들의 상황 인식과 간극이 크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물론 대법원 재판을 믿어 달라는 말이겠지만, 이런 말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놀란 가슴을 달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이미 스스로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검토한 자료들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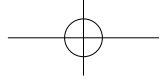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하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었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것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법원이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을 내세워 어떤 자료는 줄 수 있고 어떤 자료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선별적인 자료 제출 거부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법원이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내부의 사법발전위원회나 사법행정자문회의로는 민주적인 법원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그 구성의 비민주성·획일성이나 운영의 폐쇄성만 보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른 '사법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 내부 뿐 아니라 법원 외부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인 법원개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그 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봉적인 법원 개혁으로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법원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2. 사법행정개혁: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신설

현재 대법원장에게 전국 3천여 명의 판사 전원에 대한 임명권, 보직권, 근무지 지정권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 등의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법원 관료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승진이 강조되는 이러한 관료화된 수직적 위계질서의 법관구조 하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에서부터 수직적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법원 관료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법관에 있어서도 법원 수뇌부로부터의 재판에 있어서의 개별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법관의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이 수렴되는 민주적 통제장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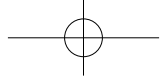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따라서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가치들을 균형있게 실현하는 '사법행정위원회(혹은 사법평의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의 신설에 찬성한다. 그리고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등 법관의 인사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데에도 동의한다. 이미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과 스웨덴, 덴마크 등 북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채택되어 있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신설되면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사법분과 자문위원안에 의하면 사법행정위원회는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관회의 선출 6인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사법행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 선출 6인, 법관회의 선출 6인’의 12인의 위원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위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하여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치를 살릴 수 있고, 법관회의가 위원의 나머지 절반을 선출하게 하여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가치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외에 위원의 임기, 운영방식 등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문위원안에 동의한다.

개헌사항은 아니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의 수를 24인 혹은 36인 이상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에 폭주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심리의 충실화를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륜 많은 법관들을 하급심 판사로 보내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하급심을 강화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수를 줄여야 한다. 대법원을 기능을 중심으로 ‘권리구제형 대법원’과 ‘정책법원형 대법원’으로 나누는 이분법에는 반대한다. 프랑스나 독일의 대법원에는 100명 정도의 대법관들이 있어 많은 상고사건들의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그 상고사건들의 판결들에서 기존 판례 입장의 변경 등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적 판단들도 다수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제나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소수의 상고심 사건에 집중해야 ‘정책법원형 대법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소수의 사건들을 고르지 않고 일 년에 약 1천 건



의 사건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만, 국가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결정들을 다수 내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3.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대법원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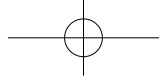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가. 김명수 코트 이전과 이후의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

##### (1) 과거의 대법원 인적 구성의 획일성

다양성을 결여한 대법관 후보 제청의 관행은 대법관을 판사의 최종 승진코스로서 여기는 법관순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2015년에 발표한 ‘역대 대법관 구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총 142명의 대법관들 중 판사 출신이 124명으로 87.3%, 서울대 출신이 102명으로 71.8%에 이르고, 여성은 4명으로 2.9%에 불과하다고 한다.<sup>1</sup> 우리 대법원은 같은 대학을 나온 50대의 선후배 남성 판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용훈 대법원장 때 진보적인 5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독수리 5형제’를 낳는 등, 다소 완화되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다시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지난 2017년 6월 16일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 중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로 ‘서울대 출신, 50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급의 현직 엘리트 남성 판사’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제청되던 데 비하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나 법학교수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1 정태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 2016. 10. 17.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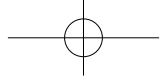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2) 김명수 코트에서의 대법관 인선의 새 경향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17년 9월 25일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바야흐로 ‘김명수 코트’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1월 2일에는 김용덕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 당시 대전지법원장이,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민유숙 당시 서울고법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두 새 대법관 모두 현직 고위법관들이기는 했으나, 안철상 대법관은 건국대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고, 민유숙 대법관은 여성으로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우리 대법관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형성된 ‘서울대 출신의 50대 초·중반의 현직 엘리트 남성 고위법관’을 의미하는 ‘서오남’의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3명의 대법관이 동시에 임명되었는데, 고영한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가,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정희 당시 법원도서관장이,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당시 제주지법원장이 새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서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사법고시 수석 합격 이후 30여 년간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그 전 해에도 두 차례나 대법관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개혁적인 진보성향의 여성판사로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전혀 없고, 줄곧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법관이다. 이동원 대법관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줄곧 판사로서의 길을 걸어 왔으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sup>2</sup> 김선수 대법관은 고위법관 출신이 아니었고,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어서 이 때에도 ‘서오남’의 공식이 깨졌다.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새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초반 남성 고위법관 출신이었다.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에다가 비록 임기말의 양승태

<sup>2</sup> ‘대법관 후보에 ‘재야 노동 변호사 포함’…대법원의 변화’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30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30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을 더 하면 총 13명의 대법관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이 된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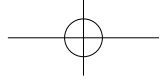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나.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의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재에서 노정희 대법관의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의 수가 4명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아지게 되었다. 그 후 김소영 대법관의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의 수는 다시 3명이 되었지만, 과거 어느 때 보다 여성 대법관의 수는 많은 편이다. 그 이외에도 순수 재야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었고, 서울대 출신의 대법관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등 ‘서오정’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가치 혁명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의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대법관의 출신 배경의 다양화가 판결성향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 간의 수적 균형’으로 이어지고 실제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의 이러한 ‘보수와 진보 간의 수적 균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내일의 다수의 견이 될 수 있는 반대의견의 활발한 개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27일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16건 가운데 33.62%인 39건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된 반면에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2017년 9월 26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37건 중 8.1%에 불과한 3건만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되었다고 한다.<sup>4</sup>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원합의체 평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법관들 사이에서의 토론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대법

3 “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8명 시대…대법 판결 변화 오나” 중앙일보 2018년 8월 3일자, 사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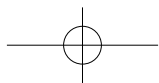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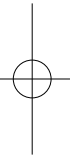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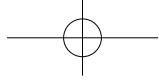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4 “10건중 1건 안되는 전합 전원일치...균형찾기 성공한 김명수 대법원” 이데일리 2019. 8.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2584368&mediaCodeNo=257&OutLnkCh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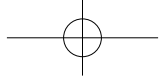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소수의견으로서의 반대의견이 쌓이면 훗날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뒤집을 자료로 이것이 쓰일 수도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김명수 코트’의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김명수 코트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함께 한 가지 한계를 지적하자면 판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나 법학교수 출신의 대법관이 현재 각각 1명씩 밖에 없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명수 코트’의 이 점에 대한 다양성 확보의 확대를 기대한다.

#### IV. 결론

시민사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잡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행정명령의 개정으로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개혁사항들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프랑스나 독일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도 꾀하며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하급심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집중조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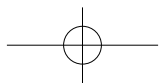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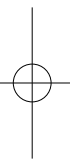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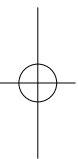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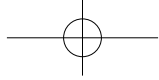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 인권으로 훑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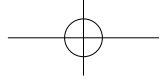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집필

[발제1]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 문제 : 김세은(과거사청산위원회, 법무법인 해마루)

[발제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 김민철(경희대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별첨 자료 참조)





[발제 1]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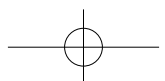
김세은(과거사청산위원회, 법무법인 해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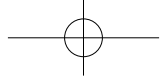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1. 들어가며

2018. 10. 30.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지 73년, 일본에서부터 소송을 시작한지 21년 만에 일본 기업에게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초 4명이었던 원고들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만이 살아남아 ‘기쁘지만 혼자만 남아 마음이 슬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언론과 소위 ‘일본 전문가’의 관심사는 ‘원고들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 갈 것인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혹자는 원고들이 강제집행에 나아 갈 경우 한일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관계를

[제3부] 집중조명 2 : 인권으로 돌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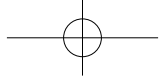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고려하여 대리인이 원고들을 설득해 강제집행에는 나아가지 말아야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일본기업에게 판결의 임의 이행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의를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결국 2018년 12월말 원고들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법원이 원고들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양국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피해를 입은 지 70여년을 기다려 겨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말로 공동체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이 한국 내 일본 자산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서 등 관련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않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반송하여 강제집행 절차는 몇 개월 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다수의 식민지 조선인들이 겪었던 민족적 수난이라는 측면에서 식민지 책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일본 정부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전쟁책임에 관한 것이며, 사람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노동을 시켰다는 측면에서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를 잠시 걷어내고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바라보면, '강제동원 그 자체'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강제동원 그 이후'부터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국제인권법상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강제동원이 국제인권규범 등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러한 피해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국제인권법상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해왔다는 점을 서술하고, 한일 양국 사회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II. 강제동원과 국제법 위반

### 1. 강제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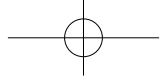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것을 중심으로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 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관) 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1944년 10월경 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조선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는 1943년경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위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응모한 다음,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합격하여 위 담당자의 인솔 하에 구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제철소에서 1일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하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외출을 허락받았으며,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았다. 구 일본제철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그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저금된 임금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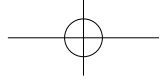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의 양이 매우 적었다. 또한 경찰이 자주 들러서 이들에게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기숙사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발각되어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은 1944. 2.경부터 위와 같이 모집된 훈련공들을 ‘징용’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동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 3.경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때 훈련공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 6.경 함경도 청진에 건설 중인 제철소로 배치되어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들은 기숙사의 사감에게 일본에서 일한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1945. 8.경 청진공장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소련군을 피하여 서울로 도망하였고 비로소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 국제인권규범의 위반

### 가. 강제 노동에 관한 ILO 제29호 협약 위반

1930. 6. 28.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회 총회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이하 ‘강제노동금지협약’이라 한다)가 채택되었고, 일본은 1932. 11. 21. 이를 비준했다.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강제노동’이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제2조 제1항). 권한있는 기관은 사기업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허가할 수 없고(제4조 제1항), 행정관청의 직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직무를 갖는 경우라고 하



더라도, 주민의 전부 또는 그중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사기업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제6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또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당하고도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하는 것은 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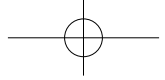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하에 체계적으로 일본에 있는 구 일본제철의 철강소 등으로 강제동원 되었고, 가혹한 노동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았다.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를 받았다. 도망을 치고 싶다고 말하거나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는 경우 감금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였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현격히 적었고, 그마저도 강제로 저금하도록 하여 일부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은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국제인권규범 위반

1948. 12. 10. 제3회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고역에 복무하지 않으며, 누구도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1956. 12. 6. UN 제21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 8. 23. 발표되었고, 1979. 9. 21. 일본국에 대해 발표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규약,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고 한다)은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고 또한 누구도 강제노동에 복무할 것을 요구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은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준수할 의무를 지는 국제인권규범이며, 그 채택은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규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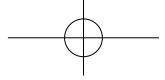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은 채택되기 이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루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작위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받고, 구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 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인도에 반하는 죄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인도에 반하는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추방, 강제이동, 고문 등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5조(c)는 ‘범행지의 군내법 위반 여부를 막론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행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되어 전쟁 전 또는 전시에 이루어진 살육, 섬멸, 노예적 학대,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혹은 정치적·인종적 이유에 근거하는 박해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극동군사재판소의 판결을 수락하여(조약 제11조),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규범성을 스스로 승인하였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협박, 감시 하에서 언어도 다른 일본에 연행되었고, 부족한 식량만을 제공받으며 위협하고 고된 노동에 종사하였다. 건강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은 물론 외출의 자유도 없이 도망 방지를 위해 감시당하는 생활 하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여 ‘노예적 학대’ 상태에 있었다. 또한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노동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공습이 가해지면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처우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된다.



### 3. 국제사회 및 한·일 양국 법원의 판단

#### 가. ILO 전문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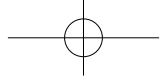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ILO 전문가위원회는 강제동원문제에 대하여 ILO 제29호 협약에 위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조속한 해결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LO 전문가 위원회의 1999년 보고서에는 “본 위원회는 이렇게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 기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자 징용이 이루어진 것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본 위원회는 현재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 간의 금전 지불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위원회가 구제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소송의 진행상황과 검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ILO 전문가위원회 2001년 보고서에서도 “과거 전쟁포로 등은 아직도 정부 간의 평화협정과 협약에 의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략) 희생자들의 연령과 촉박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다시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나. 일본 법원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2001. 12. 5.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노동은 강제노동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일본 오사카지방법재판소 1997년(와) 제13134호).

“원고들의 노동은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사전 설명과는 달리 매우 열악했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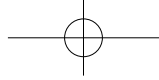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체적인 임금 액수도 모른 채 일부만 지급받거나 강제로 저금했다. 일본제철의 감시 하에 노무에서의 이탈도 거의 불가능했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 환경하에서 가혹하고 지극히 위험한 작업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종사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는 강제동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동원 방법은 메이지 헌법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위법이라고 평가된다고 하였다(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가나자와지부 2007년 (示) 제150호).

“적어도 면학 기회가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근로정신대로 권유해서 참가시킨 것은 근로정신대와 관련된 법령상 예정돼 있던 수속, 수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상기와 같은 기망행위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진학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어린 나이의 여성에 대해, 이른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고, 더불어 10대 여성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메이지헌법 하의 법제에서도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권유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앞의 기술대로 초등학교나 관청을 통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널리 그런 권유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비춰보면, 그런 권유행위는 관리 개인의 직권면탈 남용에 그치지 않고, 일본국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정책 내지 그 일환으로 행한 권력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후지코시에서도 사진이나 영화를 이용하면서 면학 등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근로정신대원을 권유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 협력했다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강제연행<sup>1</sup>이나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1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강제연행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강제연행 부분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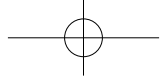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다. 한국 법원

한국 법원은 강제동원은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2018년 판결의 원심 판결).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 아래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당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하여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라. 소결

이처럼 국제사회와 한국 법원 심지어는 일본 법원까지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되고, 이것이 반인도적인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 III. 국제인권법상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권리와 그에 대한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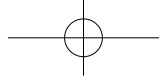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1. 국제인권법상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 질서는 주권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었고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제인권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에게도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sup>2</sup>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8조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후 채택되는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조약상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의 인권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자유권규약(1966년) 제2조 제3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a),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b),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c)’이라고 정하고 있다.

2005. 12. 16. UN총회에서는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이하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이라 한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나 법인, 개인 등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제법상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이미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

<sup>2</sup> 이주영, 백범석,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국제법학회 논총』, 2018, 167쪽



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들을 모은 것이다.<sup>3</sup>

유엔인권기구와 지역인권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권리를 배상금 지급을 넘어, 인권침해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상황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저지들을 포함하는 권리로 해석해왔다.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 중 배상에 대한 권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각 사건 피해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①원상회복(restitution), ②금전적 배상(compensation), ③재활(rehabilitation), ④만족(satisfaction), ⑤재발방지 보장(guarantee of non-repetition)과 같은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하였다.<sup>4</sup>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 제24조는 ‘침해와 배상장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는 표제 아래 진실에 대한 권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 내용에는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들이 피해를 야기했던 원인들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 행위 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가 포함된다. 피해자들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이해하고 이러한 진실들이 공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해 바시유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진실은 생존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침해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그들의 지위를 옹호하며, 국가로 하여금 어두운 과거와 직면하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통해 개혁을 추구하도록 한다”<sup>5</sup>

## 2. 실효적인 구제에 대한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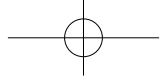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강제동원은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ILO 제29호 협정, 인도에 반하는 죄,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제인권법상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실효적으로 구제받기는 커녕 오랜세월 실효적인 구제에 대한 방해를 받아왔다.

3 이주영, 백범석, 앞의 글, 184쪽

4 이주영, 백범석, 앞의 글, 187쪽

5 이주영, 백범석, 앞의 글, 188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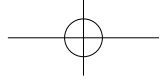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가. 일본 법률의 제정

구 일본제철은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 8. 15. 법률 제7호), 기업재건정비법(1946. 10. 19. 법률 제40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 각 법에서 정한 특별경리회사,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 4. 1.에 해산하였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출자로 야하타제철(팔번제철) 주식회사, 후지제철(부사제철) 주식회사, 일철기선(일철기선) 주식회사, 하리마내화연와(파마내화련와) 주식회사(위 4개 회사를 이하 '제2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야하타제철 주식회사는 1970. 3. 31. 일본제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70. 5. 29.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현재의 일본제철이 되었다.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될 경우 그 회사는 지정시(1946. 8. 11. 00:00을 말한다. 제1조 제1호)에 신계정과 구계정을 설정하고(제7조 제1항), 재산목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지정시에 신계정에 속하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시에 구계정에 속하고(제7조 제2항), 지정시 이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을 신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은 구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경리처리하며(제11조 제1, 2항), 구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등 소멸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변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계정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신계정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특별관리인의 승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가능(제14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일본제철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1946. 8. 11.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하여 신계정과 구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여 이후의 기업활동은 오직 신계정에서 행하고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기존 재산을 신계정에 속하도록 한 뒤, 신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제2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산과 영업을 양도하여 1950. 4. 1. 제2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외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위주로 한 구계정상의 채무는 구 일본제철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맡겨졌다. 그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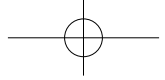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과, 구 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던 야하타, 와니시, 가마이시, 후지, 히로하타의 각 제철소 자산 중 야하타 제철소의 자산과 영업, 이사 및 종업원은 제2회사인 야하타 제철 주식회사가, 나머지 4개의 제철소의 자산과 영업, 이사 및 종업원은 다른 제2 회사인 후지제철 주식회사가 각각 승계하였다.

위와 같은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미 해산한 구 일본제철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과 영업을 그대로 승계받은 현재의 일본제철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일본기업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방해가 된다.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일본 법원이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원고들은 현재의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 청구권협정의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고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다.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8개 항목 중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이다. 그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를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등이 체결되었다.

(2) 청구권협정은 전문(전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정하였다. 제1



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이어서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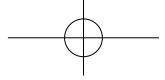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확정적인 해석으로 정리되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소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견해도 발표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sup>6</sup> 신우정, 「국제적 강행규범의 시각에서 본 강제징용 청구권의 소권 소멸여부」, 『서울국제법연구』, 2019



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청구권협정 자체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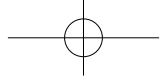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다. 청구권협정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청구권협정 그 자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했지만, 한·일 양국정부가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오랜 시간 비공개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르러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정부마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청구권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간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방해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 라.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외교부 작성 문건 등을 통해 한국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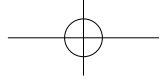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현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경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심리가 중지되어 있었다. 강제동원 소송에 관한 재판거래는 일본측과 한국의 청와대, 법원행정처, 외교부가 관여하여 재판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것이다.

#### 마.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송달 거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소유 주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2019. 1. 4. 주식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되어 압류효력이 유효하게 발생되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 1. 22. 법원행정처에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게 이 사건 주식압류결정문을 송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일본 외무성에 주식압류결정문을 포함하는 2019. 1. 25.자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 요청서”(이하 ‘해외송달요청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2019. 2. 7. 위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한 이후, 일본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요청서에 포함된 이 사건 주식압류결정문을 송달시켰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5개월이 넘도록 송달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9. 7. 19. 법원행정처로 서류를 반송하였다. 법원행정처는 2019. 7. 25. 일본 외무성으로부터의 반송서류를 수령하였는데, 그 반송서류에는 반송사유가 기재된 어떠한 문서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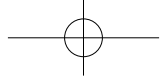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위와 같은 문서의 반송은 헤이그 송달협약 제6조<sup>7</sup>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일본이 송달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sup>8</sup>인데, 해외송달요청서는 형식적으로 협약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고, 일본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2005년에 시작된 소송이 2018년에 확정될 때까지 13년 동안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7 제6조**

- (1) 피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피촉탁국이 지정하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의 형태로 증명서를 작성한다.
- (2) 증명서에는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취지, 송달방식, 송달지, 송달일자, 그리고 그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자를 기재한다. 문서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한다.
- (3) 신청인은 중앙당국 내지 사법당국(Judicial Authority)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증명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당국들 중 하나에 의하여 부서(역주: 이미 다른 사람이 서명한 문서에 대하여 인정하는 서명을 추가하는 것)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 증명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되어야 한다.

**8 제13조**

- (1)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2) 피촉탁국은 자국법상 당해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보유하거나 송달요청의 기초가 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송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3) 중앙당국은 송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과 촉탁국에게 즉시 그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기한 민사소송이 일본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일본측이 송달을 거부하고 반송하는 것은 헤이그 송달협약 위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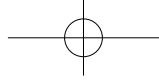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피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권리실현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결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본 외무성이 서류를 반송하여 절차가 몇 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것에 방해가 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상태의 지속을 넘어서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 IV. 결어 - 적극적인 국내·외적 조치의 필요성

국제인권법상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한·일 양국 사회의 외면 속에서 사법부에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구제를 요청해왔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히 외면 당하는 수준을 넘어 구제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주장과 맞서 싸웠다. 자신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답답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어 재판이 지연되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판결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기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반인도성과 피해의 규모, 생존 피해자들의 연령,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일 양국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며 경제보복까지 감행하자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관계의 문제’가 되어 양국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썩썩 얼어붙은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시했던 1+1안, 1+1+a안,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안 등은 강제동원 문제를 ‘돈 문제’, ‘소송의 문제’로 보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강제동원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맞지만, ‘판결’이나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그 틀을 가두게 되면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의 권리 중 일부만이 논의되게 된다. 또한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하고도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였으나 끝내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는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법판소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제1항에서 “피고들은 별지 기재의 사죄문을 원고들에게 교부하라”고 했다.

## 사 죄 문

일본국 정부 및 구 일본제철주식회사의 계승법인인 신일본제철주식회사는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당시의 식민지인 조선으로부터 다수의 청년 노동자를 강제 연행하여,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강제 연행된 사람들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도 그 반환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약 반세기동안 방치함으로써 많은 정신적 고통을 준 점도 함께 사죄드립니다.

내각총리내신

森喜 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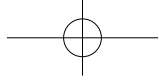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신일본제철주식회사

상기 대표자 대표취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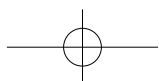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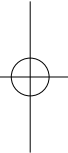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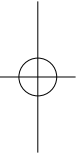
今井 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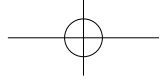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제3부] 집중조명 2 : 인권으로 돌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721





위 사죄문을 판결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언젠가는 위와 같은 사죄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발제 2 ]

##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sup>1</sup>

김민철(경희대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I. 대법원 판결과 후속조치

#### 1. 대법원 판결의 의의<sup>2</sup>

##### 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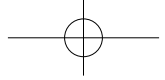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1945년 12월 재일조선인연맹 이와테현본부와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와의 교섭과 실패에서 시작하여 1997년의 일본소송, 그리고 2005년의 한국소송으로 이어진 긴 역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최종 확인한 판결이다.

(2) 기업에게 강제동원·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독일의 과거청산 정책의 상징 중 하나라 평가할 수 있는 ‘기억·책임·미래’재단도 ‘역사

1 이 보고문은 2019년 10월 2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2019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오키나와전 전몰자 유골자사 및 한일 유해봉환을 위한 제언』에서 발표한 「강제동원 문제 현황과 과제」를 보고대회의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자세한 의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이 정리한 「드디어 끊어진 무책임의 사슬-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 『민족사랑』 2019년 8월 특집호, 민족문제연구소, 14~23쪽 참조.

[제3부] 집중조명 2 : 인권으로 돌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723



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으나 법적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sup>3</sup>

#### 나. '65년체제'의 법적 파산 선고 또는 법적 정리?

(1) '냉전체제 강화를 위한 식민주의 청산 억압·미봉 체제'였던 '65년 체제'에 대해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린 것으로 평가하는 적극적 해석과 법적으로 애매하게 처리되어 오던 것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소극적 해석 둘 다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간에 '65년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청산/정리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65년체제'가 남긴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sup>4</sup>

(2) '65년체제'가 봉인한 역사 문제가 전면화됨으로써 이것이 동아시아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원형이었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베 정부가 보인 과잉반응의 한 배경이기도 하며, 역으로 이것은 과거청산 운동을 공간적(동아시아)이나 사상적으로(식민 지배/점령지배 책임 추궁) 확장시키는 영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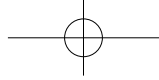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다. 새로운 상상력의 자극

(1) '보충의견'<sup>5</sup>에서 1965년 당시 강제노동 등 인권에 대한 양국의 무인식·무논의

3 “나치 국가가 강제수용, 강제구금을 통해, 노동과 무수한 인권침해행위들로 인한 절멸을 통해 심각한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 나치 불법에 관여했던 독일기업들이 역사적 책임(historische Verantwortung)을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독일경제의 재단이니시어티브에 과거에 자행된 불법과 당시에 받은 인간적인 고통이 재정적 급부를 통해서도 결코 원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 나치 체제의 희생자로서 목숨을 잃어버렸거나 그 사이에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이 법이 너무 늦게 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독일연방하원은 나치즘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politische und moralische Verantwortung)을 고백한다. 연방하원은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불법에 대한 기억을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일깨울 것이다.”

4 '65년체제'가 와해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질서·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방향과 속도, 힘 등에서 각국의 세력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강제동원 문제를 계기로 확산된 한일간의 갈등도 이런 차원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5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를 전면 비판하였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현재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에르 부르디외가 「실천감각」에서 말한 ‘생각할 수 없는 것’<sup>6</sup>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일 교섭 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고민이나 개인청구권 문제도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와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 그런 목소리는 이내 사라졌긴 했지만, 이후 ‘65년 체제’의 틀에 갇혀 이러한 문제제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경로의존성의 원리에 따라 과거청산 운동 또한 그 회로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2. 판결이 요구하는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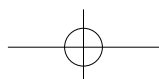
### 가. 청구권협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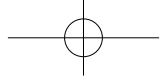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한국 대법원은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해석<sup>7</sup>을 토대로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 1) 새롭게 일본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으며 추가 협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성은 없다.
- 2)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에 대한 해석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이 조문을 두고 양국간에 불법지배냐 합법지배냐는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김선수, 김재형 재판관)

- 6 “한 시대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에는 그것을 설명하거나 고려하도록 만드는 윤리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서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개념들, 방법들, 기술들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없어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셸-롤프 트루유 지음, 김명혜 옮김,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그린비, 2011, 157쪽에서 재인용.
- 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년 8월 26일. “①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③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⑦ 한국정부는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UN 인권이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한다.”





법적 배상책임이 제기되고 있어 해석을 일치시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때 정치적으로 일본이 불법 지배임을 인정하면 한국은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은 받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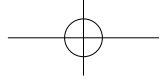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3) 배상책임 문제는 북일 수교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대신(65년체 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대신) 한일 청구권협정의 전제 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을 일본에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 2011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위헌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피해구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2015년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라는 ‘외교적 참사’다.

(2)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구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일 교섭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 일본정부와 교섭하지 않았다. 시베리아억류자와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sup>8</sup> 등은 지금까지 교섭에서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지속되고 있는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다. 일본정부가 거꾸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중재’를 요청하고 나왔다.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5월까지 무대응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은 아무리 봐도 현명하지 못했다. 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양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미해결 과제 전체를 다시 올려놓자고 역제안하는 전략을 폈더라면 외교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행히 일본정부가 문제를 경제문제로 확산시킴으로써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지만 말이다.

---

<sup>8</sup> 이학래의 위헌청구 소송.



나. '65년 체제'의 실질적 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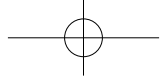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65년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즉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의리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b>대외적 (대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요청(유조은행이 보관한 한국인 노동자 통장, 일본 지자체가 소장한 화장증명서 등), 원폭피해 실태 조사 협력 요청, 유골 봉환을 위한 협력 촉구, BC급 전범 문제와 시베리아억류자 피해 구제 협의 등</li> <li>- 판결 이행 촉구와 전체 피해자를 위한 추가 협상</li> </ul>
<b>대내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추가 보상, 추념 사업, 미해결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전면적인 재개</li> <li>-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의 개선 등</li> </ul>

(2)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강제동원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일본정부에 추가자료 요청과 피폭자에 대한 공동조사 외에 유골조사와 봉환을 위한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요구, 시베리아억류자의 피해 구제와 BC급 전범 문제 등 미해결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 등이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행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추가 협상도 해야 할 것이다.

(3)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다루는 문제는 과거 국가기구인 위원회의 활동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만족스럽지 못한 위로금, 보수정부 하에서 중단된 과거청산의 후속조치의 부재 또는 미흡'으로 요약해서 평가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중단된 과거청산을 재개하여 미완의 해결과제를 수행하고 기왕의 성과를 '사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후

<sup>9</sup> 노용석·김민철·김상숙·이영재, 「과거사문제의 미래지향적 치유·화해방안에 관한 연구」, 2014, 국민대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 참조.



속조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II.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

### 1. 강제동원 피해자의 세 가지 층위

#### 가. 소송 원고 당사자 문제

(1) 관계자는 원고와 강제동원 기업이며, 강제동원 기업의 이행 거부로 강제집행 중이다.

(2) 2012.5.24 이후의 추가소송 14건 중 대부분은 원고가 승소하리라 예상하며(1차 추가소송), 2019년 1월 이후 약 400여 명이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차 추가소송)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내 재산의 부족으로 배상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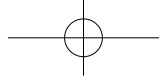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3)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1+1'안은 소송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나. 소송 미 참여자 문제

(1) 위원회의 피해자 판정을 받은 신일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예)

1) 위원회에서 피해자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263명이다.

2) '재판 받을 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자·유족에게 상황을 고지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원회에 요청을 했으나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



고 있다. 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목적(기업별 분류 등)에 맞게 정리·분석한 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일본과의 교섭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3) 추가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못한 신일철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 가) 현재까지 확인된 동원자 총수는 8,400여명(고쇼 다다시의 공탁금명부 숫자)
- 나) 신일철주금이 ‘화해’를 요청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263명? 8,400명?

#### 다. 군인·군속과 무자료 피해자·국내 미진출 기업 피해자 문제

(1) 관계자는 피해자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다.

(2) 군인·군속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자료가 없는 노무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1) 군인·군속은 고용 주체가 일본정부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처럼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이다. 특히 영국·프랑스처럼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출신의 구 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한 예가 있고, 청구권협정 과정에서도 연금 문제의 지급 시한이 일본 내에서 검토된 바 있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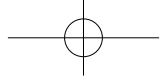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 무자료 피해자나 국내 미진출 기업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다.

## 2. 피해 구제의 원칙과 방안들

### 가. 피해 문제 해결의 원칙

(1) 피해자의 동의 :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잘못된 선례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결안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바 있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의 존중 :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으나 해결책은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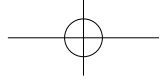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3) 전체 피해자 구제 방안 제시와 한일 협상 병행 : 전체 피해자 구제 방안 없는 상황에서 한일 협상은 미소송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재원을 만들어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피해자 전체를 포함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교적인 현실 때문에 일본정부에게 협상으로 제안했던 1+1안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합적인 해결 방안(1+1에서 2+2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방안을 말하지 않고, 1+1만 내세운다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 나. 기존 해법안

- (1) 정부 협상안 1+1(+@) : 소송 당사자만, 한일 기업 책임화
- (2) 이혜훈 의원안 2+2 : 판결 이전 상황
- (3) 강창일 의원안 : 일본기업 배상 + 전체 피해자 구제(일본기업 배상이라는 전제 성립)
- (4) 홍일표 의원안 : 한국 정부 배상 뒤 구상권 확보(국내문제화 위험)
- (5) 문희상 의원안 1+1+@ : 정부 협상안에서 더 후퇴, 국민기금?, 위안부 합의 되풀이 위험

#### 다. (가)강제동원인권재단법 제정

- (1) 방향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전면적 개선을 통한 과거청산의 지속과 '사회화', 일본정부·일본기업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2) 주요 내용
  - 1) 이른바 '2(일본정부, 일본기업)+2(한국정부, 한국기업) 출연 인권재단법'(이혜훈의원 발의안 등)



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일본정부 출연 가능성은 없어 일본 기업의 출연 가능성을 기대한 것이다. 동아시아 시민들과 연대 강화 (태면철도 강제노동 피해자 추모제 공동 개최, ILO 10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를 통한 강제노동 의제화 등)를 통한 기업 압박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 따라서 '2+2'안은 국내적으로는 지원재단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외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출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자는 취지의 사실상 '2+1'안이다.

2) '인권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생존자 대상으로 한 일시금 지급과 유족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연금 지급 등의 방식과 금액 검토.

3) 기왕의 안들에서 핵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강제동원위원회의 조사 자료 전체를 재단으로 이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4) 자료 조사와 진상규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본군'위안부' 연구소를 인권재단에 돌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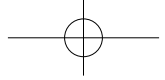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Ⅲ.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 1. 강제동원위원회 활동 평가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개선

##### 가. 강제동원위원회의 활동 평가

(1) 2004년에 통과된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에 출범한 강제동원위원회는 2015년까지 11년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추모사업 등의 활동을 막을 내렸다. 크게 세 시기로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다면 제1기는 진상규명에 주력하는 시기이고, 제2기는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지원활동을 병행하여 성과를 냈으며, 제3기는 위원회의 존속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이름만 유지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내의 과거청산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과거청산 문제 역시 민주화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위원회의 활동에서 잘 보여주었다.

[제3부] 집중조명 2 : 인권으로 돌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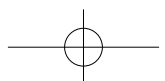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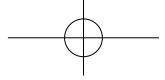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최장수 위원회였던 만큼 다른 과거사 위원회보다는 많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판정을 내렸다. 또한 한국정부가 기왕에 거칠게나마 조사했던 자료와 일본정부로 받은 자료, 그리고 일본 연구자와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했던 자료와 피해자들이 직접 만들거나 소장했던 방대한 자료들을 한 곳으로 집적하였다. 이들 자료와 명부 분석을 통해 1차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족스럽지만 한국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추모사업 등을 하는 성과를 냈다.

2) 그러나 위원회가 11년간이나 활동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추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사람들, 유골문제, 사할린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BC급 전범 문제, 야스쿠니합사 문제, 시베리아억류자 문제 등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추모공간 또한 정비되지 못했다. 일부 피해 실태가 확인된 국내 동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는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의 책임이 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게 있지만, 한국정부와 위원회가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또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2) 위원회의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인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자면, 조사 활동이 피해자 판정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강제동원의 정책과 구조, 시기별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유형 등 실체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손도 대지 못했다. 진상규명의 범주를 매우 협소화시켜 적용한 탓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 위원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역사적 기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특성상 의문사를 당한 개인의 죽음에 진상규명의 초점을 두고 명예회복을 시도했다. 게다가 가해세력의 조직적인 압력과 저항으로 인해 가해 구조까지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쏟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헌신과 저항을 뚫고 진상규명을 힘겹게 해낸 그 업적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이후 과거사 위원회에 짙은 그림자를 남긴 점 또한 사실이다.

1) 진상규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법적인 감각과 역사적인 감각의 차이도 예상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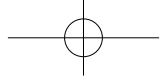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에 컷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법적 감각과 구조적 인식을 중시하는 역사적 감각 둘 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전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안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물리적·심리적 압박감이 구조를 시야에 넣어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여유를 주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안이한 선택을 하게 만든 변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향후의 조사와 연구는 이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격을 좁혀가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위원회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 ‘후속조치’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 상설화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이라는 서로 허용되지 않는 전략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원회 상설화 추진으로 재단은 일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추진되어 왜소화되고 법적 안정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 그 결과 강제동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재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 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개선 방향

(1) 과거청산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시작으로 추모와 기억,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화와 인권의식 확대 과정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과거청산의 사회화’라 부를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수행할 만한 제도나 인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의 미비와 부족한 자원, 전문가 부재 등으로 강제동원역사관이라는 소중한 자산마저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게 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위원회가 수집하고 조사한 자료들을 재단은 이관받지 못했다. 방대한 자료의 축적은 있었으나 그것을 시민사회와 학계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보수정부가 그러한 이용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만능의 칼을 들이대어 대부분의 과거사 자료를 밀봉시켰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회적 저항 없이 강제동원 문제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2) 앞서 언급한 (가)강제동원인권재단법 제정을 통해 기구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피해자·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보론] 해결해야 할 강제동원 문제의 현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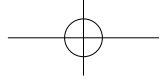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요지 :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만족스럽지 못한 위로금, '후속조치'의 부재
- 진상규명 :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 수집하지 않은/못한 피해 자료들(통장, 과거 장 등)
  - 피해회복의 지연 : 사할린 동포, 시베리아 억류자, 피폭 1~2세 문제(진상규명조차 부재) 등
  - 추모시설의 불비 : 천안 망향의 동산 정비(무연고 유골, 위패관, 강제동원 묘역 등)
  - 유골 문제 : 돌아오지 못한 유골, 교섭에 응하지 않는 일본 외무성
  - 기억투쟁 : 유네스코 산업유산을 둘러싼 한일간의 기억투쟁
  - 재단과 역사관 : 법적 근거의 취약함, 빈약한 재정, 조사·연구의 부재, 전문가 없는 역사관, 위원회의 자료 미이관 등

### 1. 군 관련 강제동원 피해 지속 문제

#### 가. 피해 구제의 배제·차별 문제

(1) 전후 일본정부는 호적 조항과 국적 조항을 이유로 보상입법에서 구식민지 출신의 군인·군속을 배제하거나 차별 적용하는 정책을 취했고, 사법부도 이를 추인했다. 2012년에 제정된 시베리아억류자 관련 법 역시 재일한국인은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국가의 편협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2) 일본 의회가 2010년 6월 '전후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일명 시베리아특조법)'을 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에 의해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 억류되었던



일본 군인에게 특별급부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2010년 현재 생존자 약 7만 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상자들은 억류기간에 따라 25만 엔에서 많게는 150만 엔까지 지급했으며, 국적 조항을 두어 조선인과 중국인은 제외하였다. 러시아 군사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조선인 포로카드에 따르면 약 3천여 명이 포로로 억류되었다 한다.

#### 나. BC급 전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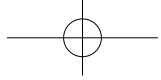
(1) 일본군이 포로 감시를 구식민지 출신자에게 맡김으로써 전범으로 책임을 묻게 되었다.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본국의 요구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BC급 전범은 복역한 이후에도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국인 전범자들은 1991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 1999년 최고재판소에서는 「심각하고 막대한 희생 내지 손해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입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함. 이를 계기로 2008년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없이 폐기되었다.

(2) 위원회가 한 일은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결정서 한 장뿐이었다. 전범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재판 결과, 수감생활, 그리고 출감 이후의 삶과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

#### 다. 야스쿠니 무단합사 문제

(1) 야스쿠니신사에는 현재 21,000여명의 조선인이 제신(祭神)으로 합사되어 있다. 제신은 ‘전쟁에서 천황을 위해 죽었다고 천황이 인정한 사람’으로 죽어서도 그 영혼이 일본군국주의에 구속받고 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까지 제신으로 삼은 야스쿠니신사는 당사자와 유족의 합사 취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제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2) ‘노!합사’ 1차 소송 패소, 2차 추가 소송 진행 중이나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야스쿠니신사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종교관용론, 수인한도론, 행정서비스론



등으로 유족의 사자추모권 부정) 합사 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야스쿠니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관련 유족과 시민단체는 2019년에 유엔특별 보고관을 통해 야스쿠니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2. 유골 문제

### 가. 군인·군속 유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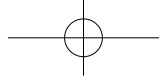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유골 공동 조사와 봉환을 위해 민간단체가 수년 간 일본정부와 교섭한 결과 일본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2016년 12월 한국 정부에 유골공동조사에 관한 로드맵 작성을 요청했으나 구체화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골 문제도 진전이 있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의 DNA 채집을 비롯하여 해외 유골 수집에도 지원단의 담당과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유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유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2) 2016년 외교부 면담에서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은 지원단 관할 사안이므로 행안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유골 문제는 외교상의 문제가 있어 행안부와 외교부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봉환한 유골의 안치 문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협력이 필요하다. 천안 망향의 동산을 정비하기 위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속히 협력해야 한다.

### 나. 노동자 유골 문제

(1) 일본 정부가 기업 책임으로 미룸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봉환되고 있어 제대로 진상규명 없이 봉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2) 기업이 소장한 강제동원 관련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장된 화장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여 일본 NGO와 협력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 3. 원폭피해자 문제<sup>10</sup>

가.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할 사안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sup>11</sup>에는 한국정부가 원폭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태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원폭피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조선인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피해 실태를 밝히는 노력을 요청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인이 원폭피해를 입게 된 원인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해야 한다. 그 전제로서 ‘피해 실태 해명’부터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한국정부가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 제안

(1) 1945년 8월 6일, 1945년 8월 9일 시점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을 맞은 조선인 숫자와 사망자 숫자 등을 밝히려는 요청을 남북 공동으로 일본정부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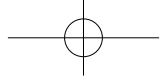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 남북 원폭피해자의 교류 대회를 열고, 공동 추모제를 시행한다.

<sup>10</sup> 이 문제는 이치바 준코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한 것이다.

<sup>11</sup>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원폭피해자법, 법률 제14225호, 2016.5.29., 제정, 시행 2017.5.30.)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2017.8.30 첫 회의 개최. 위원 중 역사학자 부재로 실태조사 미흡.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원자력 피해, 사회복지, 의료) 전문가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





(3)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는 대화를 남북 공동으로 열고, 남과 북의 원폭피해자들을 초대한다.

(4) 공동 사업은 아니나 고려할 사안이 있다. 북쪽 피폭자들은 “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북쪽에서는 의약품이 모자라서 일본정부에 대해서 과거청산 문제와 달리 인도적으로 빨리 의약품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그동안 일본정부에 해왔다. 그래서 남북 원폭피해자 복지 증진이란 명목으로 한국정부가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의약품을 북쪽에 보내는 사업을 시작하면 일본정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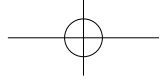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다. 원폭 피해자 2세 문제

(1) 2세들은 남·북이나 일본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인 영향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2016년 조선피폭자협회가 [일본정부에 송부한 요망서]에도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우리나라 피폭자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폭 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 돌아가셨고, 지금 생존자는 70~80세의 고령으로 인생 만년을 보내고 있고 2세, 3세도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당연히,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연행하고 원폭피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장은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우리 피폭자들과 아이들의 원폭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약품제공 등, 피폭자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전제조건이 없는 인도적인 의료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세 문제도 유전적인 영향이 100% 부정되지 않는 한, 피폭자 1세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일본에서 2세들이 일본정부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을 ‘不作爲’라 주장하며 재판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에 한국인 2세들에게도 무료 검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 4. 사할린 잔류 조선인 문제<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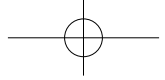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 1944년 9,000명이 규슈 등지로 전환배치되어 1945년 8월 일본 패전 당시 남사할린에는 약 43,000명의 조선인이 남아있었다. 이들 중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최대 30,000명으로 추산. 이들은 일본 국적이 박탈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버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일본 정부의 기민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나.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사업 추진되어 2010년 12월 현재 3,700여 명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대상자와 가족이 다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위원회 피해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0년 12월 23일 현재 사할린 노무동원 피해신고건으로 집계된 9,473건 중 37.3%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현지사망이 14.9%, 행방불명이 19.4%로 피해자 중 34.3%가 강제동원된 후 귀환하지 못하였다. 남사할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과 행방불명 비율이 높은 것은 해방 후 억류조치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사할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1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할린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2011.



## 5.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 문제

### 가. 일본 유초은행이 소장한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통장’ 반환 교섭 건

(1) 국제법상 식민지 시기에 통치와 관련해서 생성된 국가문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문서는 독립된 국가로 이전 또는 복제할 수 있다.(선례로서 1947년 이탈리아와의 강화조약, 2001년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문제에 관한 협정, 1983년 국유재산, 국가문서와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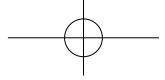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 유초은행 소장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통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문서로 정부가 일괄 반환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 일은 추가 진상 규명의 일환으로서도 의미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는 정부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 나. 우편저금

(1) 군인군속의 군사우편저금 기록은 개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어서 일본 정부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 협상을 통해 한국인 관련 기록을 일괄적으로 가져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 연금 기록

(1) 일본 후생성에는 한국인들의 연금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일본 정부로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제공할 것이므로 이 역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최낙훈 사례)



## 6. 기억·기념사업과 추모사업 문제

### 가.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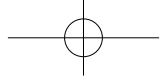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1) 2015.7.5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을 세계 산업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밝히도록 권고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한국)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가 공동으로 국제적인 비판 여론 조성하여 아베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2) 2017.7.5 일본정부는 ‘보전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보전상황보고서’를 검토함과 더불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일본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2018.6.24~7.7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한 일 공동으로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할 것;
- ②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 ③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역사 전체’에 포함시킬 것;
- ④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제2차 세계대전, 즉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을 ‘역사 전체’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 ⑤ 일본정부의 해석전략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제동원 관련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할 것;
- ⑥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

13 『일본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해석전략 연구』(2017년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구책임 김민철).



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취하도록 촉구할 것.

(4) 한국정부에도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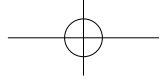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① 한국정부는 유네스코세계위원회 회원국을 상대로 ‘보전상황보고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것;
- ② 일본정부가 도쿄에 설립하려는 ‘정보센터’에 한일 민관 공동으로 강제노동 등 ‘역사 전체’를 밝히고 보존하는 사업을 제안할 것.

#### 나. 천안 망향의 동산 정비 사업<sup>14</sup>

(1) 조성 경위 :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세워진 곳”으로서 특히 “일제강점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동원된 해외동포들의 귀향의 염을 실현하는 장소이자, 후손들에게 구구견상실의 아픔과 교훈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장소로 해외 동포를 향한 우리 국민의 동포애가 살아 숨 쉬는 장소”

(2) 현황 : 해외동포와 강제동원 피해자(일본군위안부 포함)들의 묘와 봉안당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무연고 유골도 합장 형식으로 안장·안치되어 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와 개별위령제가 치러지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2017년 1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매년 8월 14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추모비 제막식 등의 행사가 망향의 동산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망향의 동산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묘소로서 위령, 추모, 기념 등 각종 사업의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4 조시현, 「국립망향의 동산 봉안당 관련 문제 검토」(2018.7.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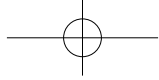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 (3) 강제동원 피해자 묘역 조성 방안

- 1) '국립' 강제동원 피해자 묘역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구역을 표시하고 명명함으로써 최소한의 재정으로 상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2) 행정안전부가 망향의 동산으로부터 임대한 봉안당(위패를 임시로 안치)의 관리권 조정
- 3)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를 추모하는 기념물 조성(일본군위안부 추모비만 있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임)

### 다. 용산역 앞 공원내 강제동원 기념물 조성 사업

(1) 용산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원지로 출발하기 위해 모였던 핵심적인 집결지였던 만큼 역사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국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기념물을 조성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용산역 앞의 공원이 적격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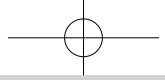
(2) 민간에서 만든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공원 내로 이전하여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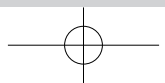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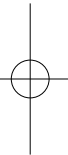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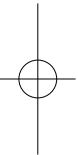
[ 토론 ]

##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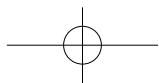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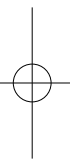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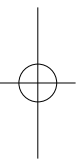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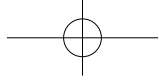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 별첨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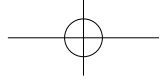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자료 1  
직장갑질 119









---

#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직장갑질119 소개 및 법 시행 후 직장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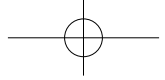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2019. 12.



**직장갑질119**

- 1 -

자료1 - 직장갑질119 747



# I 직장갑질119 소개 및 경과

## 1.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겪는 직장 갑질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2017.11.1. 출범한 민간공익단체

### ①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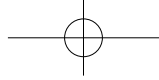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카카오톡에서 ‘직장갑질119’ 검색 or 인터넷 주소창 gabjil119.com 입력
- 상담운영 ▲월-금 : 10:30-21시 ▲토 : 10:30-13시 ▲일,공휴일 휴무

### ② 이메일 : gabjil119@gmail.com, 4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함.

상담건수 : 1일 평균 62건, 1년간 22,810건 (2017.11.01 - 2018.10.31.)

## 2. 직장갑질119가 만든 변화

-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 공론화 및 온라인 모임 결성 ⇨ 노조 설립 및 갑질 해결
- 방송계 ‘상품권페이’ 공론화·온라인 모임 ⇨ 방송스태프노조 설립, 상품권페이 중단
- 상여금 축소·식대 삭감 등 최저임금 필수 폭로 및 공론화(2018.1.)
- 대한민국 최초 직장갑질 지표 개발 및 지수 발표(2018.11. / 2019.10.)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론화 및 통과 촉구 ⇨ 괴롭힘 금지법 통과(2018.12.27.)
-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근로자대표 허구성, 문제점 공론화
- 대한민국 최초 직장갑질 감수성(본인의 감수성 측정) 지표 개발(2019.7.)
- 온라인 업종별모임 운영으로 공론화 및 노조 가입 등 집단적 해결 모색
  - 현재 9개 온라인모임 운영 중 (▲한림성심병원모임 ▲병원 간호사-직원 모임 ▲보육교사모임 ▲방송계갑질119 ▲반월시화공단 노동권리모임 ▲대학원생 119 ▲콜센터119 ▲사회복지119 ▲시설관리119)



### 3. 직장인들의 직장갑질119 추천사

#### < 오픈채팅방 닉네임 [PT]님 >

제 사건을 000 스태프님께서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때부터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안전벨트 메고 완주했습니다. 가장 지치는 목요일... 카톡 열어놓고 곁에 계셔주는 모습만으로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시간 잊지않겠습니다.

#### < 오픈채팅방 닉네임 [키키]님 >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몇 개월간 부당하고 구제신청 준비하면서 궁금한점, 주의해야할 점 많이 알려주셔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아서 구제신청 잘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 < 이메일 주소 s\*\*\*\*\*@\*\*\*\*\*.com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일매일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메일이없어서. '너같은 인간은 당해도싸다'라고 생각하진않았고. 답메일이 없는줄알았습니다. 오늘 메일이 온것을 보고 한참 울었습니다. 농약까지 사두고 아이에게 먹이고 저도 먹을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변호사님. 메일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답변메일을 받을때까지 제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당장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시상황을 매모하고 나열해두었습니다.

#### < 이메일 주소 w\*\*\*\*\*@\*\*\*\*\*.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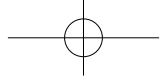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변호사님덕분에 용기를 얻었 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아직 근로기준법적용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없이 일만하다보니 babo로 보여서 함부로 갑질해도 모르는사람 인줄 알았나봅니다. 아직 다해결된게 아니지만 싸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진심담긴 답장에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이메일 주소 q\*\*\*@\*\*\*\*\*.com >

살면서 이렇게 진심어린 답변은 처음 받아봅니다. 너무 괴로워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 사무장 및 노무사님들과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민원도 넣어봤으나 오히려 더욱 괴로움만 심화된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고 혼자 감당해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기구에 민원넣어봤자 그것도 이메일로 보내봤자 할 수 있는게 뭘 얼마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상세히 자세히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가해자 고발은 시작도 안했는데 상처가 일부 치유된듯합니다. 이메일에 나와 있는 글을 읽고 어떻게 딱 하면된다고 꼭 집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미안하실 필요없습니다. 제가 처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시고 그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법을 제시해주신 이 답변이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사기,갑질이 만연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는 000님과 갑질119스태프들의 앞날에 건강과 보람,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 이메일 주소 s\*\*\*\*\*@\*\*\*\*\*.com >

답변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법률적인 근거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까지 자세하게 상담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감을 잡을수 있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이런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또 갑질을 당하면 예전처럼 당하기만 하기보다는 정당한 제 권리를 찾기위해 한번쯤 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힘이 되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밤늦게까지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 답변이 늦는다고 좀 투정을 부렸는데 친절하게 응해주신 스태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II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의 변화

### 1. 직장갑질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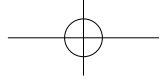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 직장갑질119는 2018년과 2019년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갑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직장갑질 지수\* 조사를 실시함
  - 직장갑질 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41개 문항의 지표로 회사의 갑질 수준을 숫자화 한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갑질이 없고,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
- 2019년 직장갑질지수는 30.5점으로, 2018년 35.0점에 비해 4.5점 감소. 법 제정과 시행을 전후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
- 문항별로 볼 때 모욕, 회식강요, 폭언, 반성강요, 성희롱 등이 많이 줄었음

	지표	2018	2019	비교
1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42.0	29.9	▼12.1
2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 등)을 강요한다	40.2	30.3	▼9.9
3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 협박을 한다	33.8	23.6	▼9.8
4	회사에서 부당한 경위서나 반성문 등을 쓰도록 한다	30.6	20.9	▼9.7
5	상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다	26.3	17.9	▼9.4

-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2018년 대기업이 민간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갑질 지수가 높아 갑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9년에는 역전되어 민간대기업 갑질 지수가 낮아짐

영역	구분	점수		차이
		2018년	2019년	
사업장 구분	민간 대기업	37.5	30.6	▼6.9
	공공부문	35.6	26.0	▼9.6
	민간중소영세기업	28.4	31.4	▲3.0

- 공공부문의 경우 예년에 비해 갑질지수가 9.6점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사내규정 정비, 교육 실시 등의 여부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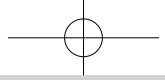
## 2. 법에 대한 인식, 괴롭힘 인식 변화

- 직장갑질119는 2019년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식, 법 시행 후 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2%.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두 배 이상(2.16배) 늘어남.
  -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9년 6월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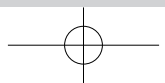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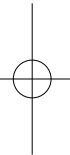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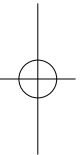
	직장유형별										
	국내 대기 업	국내 중견 기업	국내 중소 기업	외국계 대기업	외국계 중견 기업	행정부 처 및 지자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영세 개인 사업자	협회 직능단 체기타 조직	기타
변화가 없다	61.4	63.3	64.9	30.0	83.3	51.3	50.7	53.2	65.5	54.3	50.0
줄어들었다	38.6	36.7	35.1	70.0	16.7	48.7	49.3	46.8	34.5	45.7	50.0

- 직장인 열 명 중 4명,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
  -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39.2%, ‘변화가 없다’는 60.8%
- 법 시행 전후 교육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31.2%,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68.8%로 직장인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갑질 예방 교육은 공공기관(59.7%), 국내 대기업(46.4%), 국내 중견기업(32.3%), 국내 중소기업(22.2%), 영세 개인 사업자(10.1%)순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0.9%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68.8%), 영세 개인 사업자(64.7%)에서 낮게 나타났고, 공공기관(88.1%)에서 높게 나타났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업종(직업)별로 온라인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있다’가 36.8%로 ‘없다’(24.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온라인모임을 통해 직장갑질을 해결하고 싶다는 직장인들의 의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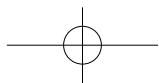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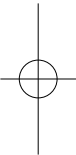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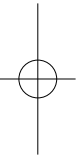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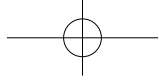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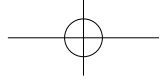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자료 2  
고 김용균 재단









고 김용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목숨'이다.

BREW

숫자로 보는

# 故 김용균

사망 338일 만에 사망 신고

출생에서 취업까지

## 24년

1994년생.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취직. 1년 계약직

사망에서 발견까지

## 4시간

작업지침대로 홀로 밤새 컨베이어벨트 살피다 사고  
다음날 새벽 발견

입사에서 업무까지

## 5일

기본, 직무 교육 5일 후 태안화력발전소 9·10기 현장 투입

원청 급여에서 하청까지

## -234만원

원청 책정 월급 446만원  
김씨 실제 월급 212만원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노동약법 없애지  
불법파견업체 없애고 근로기준법  
정규직 전환은 직선으로  
나 김용균은 하청 파견 노동자  
적한 생계를 유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업무에서 사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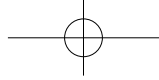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3개월

2018년 9월 17일 취업  
2018년 12월 10일 사망  
제작 박문유 전서영

.....● TMI : 법 개정까지

## 28년

1990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올해 전부 개정  
그러나 도급금지 업종에 '컨베이어벨트 작업장' 빠짐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약속 미이행 자료 - 정규직 전환 관련

### 1.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정부 입장	별도의 공공기관 설립	전환 제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입장	직접고용(김용균특조위권고안)	KPS로 재공영화(김용균특조위권고안)
김용균 특조위 권고	직접고용	KPS로 재공영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직접고용	직접고용

### 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과 이행책임

####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 개선권고 및 이행방안

권고1.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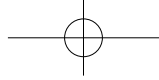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세부권고안]

- ①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각 발전사로 통합운영하고,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 한다.
- ②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재공영화하고, 이에 따라 민간정비회사 소속 노동자를 한전KPS가 직접고용한다.
- ③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각 발전사로 통합운영하는 것과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는 것에는 2차 하청 업무(상시지속적 업무)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2차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직접고용한다.
- ④ 1, 2차 하청 노동자를 발전사 및 한전KPS로 직접고용할 경우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위계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직제로 편입시킨다.

#### 1)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책임

##### (1)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2018년 12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및 지시사항)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현합니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 준 새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략)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이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중략)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시각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또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 유족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강구 지시: 이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구성되었음.

※ 발전사 경상정비 업무는 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김용균 대책 이후 정규직 전환 노사 전 협의체 구성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지 않음. 사각지대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무용지물이 되었음.

(2) 김용균 특조위 구성과 재발방지 대책(2019.2.5.)



2019. 02. 05


###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

당정은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故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과 이행책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발표(2019년 11월 5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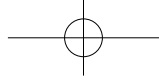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 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과 직결 관련된 직업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고용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 다.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외주화 유망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3)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 및 직접고용원칙 적용 필요성

노동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생명존중 및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인명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면서,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일 경우에는 외주화를 제한하고 직접고용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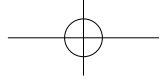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원칙”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연구용역인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2017)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건 금지대상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안전관리업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관련 업무가 생명·안전업무로 제시된다.

#### 1)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연구>

표 9. 비정규직 사용금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총 합계점수)

번호	직종	점수*	순위
1	<b>[공중보건]</b> 인간, 동식물과 관련된 방역, 감염관리업무	85.9	3
2	<b>[공중보건]</b> 정수, 수도 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	79.0	8
3	<b>[의료]</b> 응급의료업무, 중환자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의 업무와 이를 지원 하는 업무	82.2	6
4	<b>[의료]</b> 혈액 체계의 제조, 관리, 수송업무	75.7	11
5	<b>[재난관리]</b> 재난 관리와 긴급 구조 업무	91.1	1
6	<b>[인차력 및 발전]</b>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설비의 운전 업무	86.5	2
7	<b>[인차력 및 발전]</b> 원자력 설비의 관계, 운영, 정비 및 안전과 보안업무	83.8	5
8	<b>[원자력 및 발전]</b> 발전설비 관계, 운영, 정비 및 안전과 보안업무	75.7	12
9	<b>[가스 및 석유]</b> 인수, 제조, 저장, 공급 업무와 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72.5	16
10	<b>[정보]</b>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업무	71.6	17
11	<b>[통신]</b> 통신망 관리와 운영, 수리업무	71.1	18
12	<b>[공중시설]</b> 공공이용시설, 공공교통시설의 안전업무	85.4	4
13	<b>[운수]</b> 도로유지와 관리업무	62.1	20
14	<b>[운수]</b> 선박안전과 관련된 업무(항해, 운항, 통신, 기관, 승무, 안전관리 등)	76.9	10
15	<b>[운수]</b> 여객차 운전 업무	77.5	9
16	<b>[운수]</b> 철도 차량, 선로, 통신 및 신호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정비업무	80.6	7
17	<b>[항공]</b> 관제업무	73.9	15
18	<b>[항공]</b> 탑승수속, 보안관련 업무	65.9	19
19	<b>[항공]</b> 항공기 조종 업무	75.4	13
20	<b>[항공]</b> 항공기와 항공시설, 관련 설비의 운영, 유지, 정비, 보수업무	75.0	14

\* 델파이 조사에서 700점 만점을 가진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필수유지업무(전기사업 부문)

###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2017. 5. 25)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위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청취,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거나 무늬만 수용하는 것을 근절하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대통령 지시 사항 발표)

##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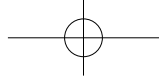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①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측이 참여하도록 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② 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당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주화가 위험을 일상화, 구조화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료환경설비운전의 직접고용과 경상정비의 한전 KPS로의 재공영화를 발표했다.

-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과 동일한 결론임.

-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9년 8월 19일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2019년 11월 5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모두 정부가 발표한 내용임.

-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운전은 특정 하청업체(한전산업개발)를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하나 한전산업개발은 참고자료②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원청에서 받은 직접노무비를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은 업체임. 노동자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남. 따라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의 직접고용과 경상정비의 한전KPS로의 재공영화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이행해야 함.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약속 미이행 자료 - **노무비 삭감 없는 지급 관련**

1.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업체의 직접노무비 미지급과 지급 방안 마련 약속

1) 고 김용균 노동자 직접노무비 미지급 사례 확인에 따른 정부·여당 발표(20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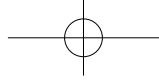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2019년 2월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후속대책 세부브리핑 자료

<b>당정 발표문 세부 브리핑</b>	
4.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노무비 미지급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

1) 조사결과

<b>노무비 착복(금액, 비율)</b>				
발전소	공사명	노무비 정산금액	실인건비 추정 (착복금액)	정산금액대비 인건비지급률 (착복률)
동서당진 (일진파워)	2018년보일러설비 경상정비	2,322,512,892	1,293,387,244 (1,029,125,648)	55.7% (44.3%)
동서당진 (금화PSC)	2018년 1호기 보일러, 터빈경상정비	2,514,280,242	1,383,798,814 (1,130,481,427)	55.0% (45%)
남부하동 (일진파워)	17년. 11월~18년 10월 보일러설비경상정비	11,707,863,971	6,801,178,846 (4,906,685,125)	58.1% (41.9%)
남부하동 (HPS)	2018년 터빈, 보일러 경상정비	7,034,987,413	4,299,448,397 (2,735,539,016)	61.1% (38.9%)
서부태안 (한산)	2018년1~8호기 석탄취급설비경상정비	6,250,204,045	2,986,444,667 (3,263,759,378)	47.8% (52.2%)



## 권고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 [권고 필요성]

- 현재의 도급계약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기 어려움.
- 첫째, 도급비 설계가격인 예정가격 전체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해서 가격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설계시 노무비(시중노임단가)에도 낙찰율이 적용되기 때문임. 둘째, 도급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서 상 직접노무비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경상정비 공사계약에 따른 직접노무비 중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은 47~61% 수준으로 추정됨.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은 노무비는 상당부분 기업이윤으로 착복된 것임.
- 따라서 도급비 중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노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무비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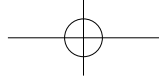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세부 권고안]

- ① 도급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시 직접노무비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도급계약서 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입장

-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이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만 천하에 공개됨. 위험한 작업 환경 외에도 노무비에 대한 중간 착복이 보도된 바 있음.
- 이에 정부와 여당은 노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2019년 2월 5일)했으나 발표 11개월이 지나도록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체는 원청인 발전사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를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사와 하청업체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정작 이 논의에서 빠져 있음.
- 아울러 현재 발전사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무비를 감안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더 이상 국민이 낸 전기요금(준조세)으로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음.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약속 미이행 자료 - 1급 발암물질 대책 관련

□ 1급 발암물질 '결정형유리규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도 누락!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 위반'

- 대한화력발전소 故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족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발전소 현장조사를 통해 석탄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바 있음.
  - 석탄회 찌꺼기 처리 작업 중 공기 중에 있는 결정형유리규산(1급 발암물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m<sup>3</sup>당 0.05mg 보다 8~16배 초과하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됨. (\*회찌꺼기 처리작업 컨베이어 슈트 상부 측정 수치/ 특조위 결과보고서, 2019)
  - 이 정도의 농도 수준은 국내 석탄 광업(0.14 mg/m<sup>3</sup>),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0.111 mg/m<sup>3</sup>), 도자기 및 기타 오염 제품 제조업(0.108 mg/m<sup>3</sup>), 토목건설업(0.098 mg/m<sup>3</sup>)보다 높은 농도 수준임.
- 결정형유리규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임에도 그 동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켜왔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광물성분진', 그 중에서도 결정형 규산(석영, 크리스토팔라이트, 트리디마이트)이 포함되어 있어 광물성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석탄작업의 경우 여지없이 측정항목에 포함했어야함. ⇒ 명백한 범위만 사항 (노동부 작업측정기관에 대한 감독 필요)
  - 또한 작업환경측정자(위탁업체)는 MSDS, 현장점검 등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대상, 측정시기 및 장소 등 측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부실하게 수행했으며, 발전사도 이에 대해 방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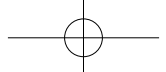
나) 크리스토팔라이트(Cristobalite)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 2017년 이후 일부 발전소에서 측정하기 시작했으나 석탄 컨베이어 주변, 회정제공장, 보일러 노내 등 석탄 및 회 분진이 발생하는 주요공정 및 장소는 측정하지 않은 부실측정임. (\*특조위 지적사항)

<발전사별 결정형유리규산 측정시기 및 측정 장소>

	측정 시작시기	측정장소
동서발전	18년 9월	석탄 취급 설비
서부발전	18년 3월	석탄 취급 설비
남동발전	17년	연료분석실
남부발전	하동사업소: 19년 상반기 삼척사업소: 17년	연료분석실
중부발전	보령본부:18년 상반기 신보령본부 17년 8월	석탄 취급 설비



□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 다량 함유 사실 인지하고도 방관,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전무'

- 석탄발전소에서 가장 문제되는 유해물질은 석탄이나 타고 남은 석탄재(ash)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국제암연구소(1997)에서 발표한 1급 발암물질임.
- 석탄을 처음 수입할 때 첨부되는 입탄성적서(COA)에는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이 함유량을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산 석탄에 대해서 자체 검수분석을 통해 결정형유리규산(SiO2)의 함량도 직접 전산입력 해 오고 있어 이미 석탄 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
- 유연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석탄의 열량과 수입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정형유리규산이 존재하며, 발암성 물질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입탄성적서(COA)에 석탄 회성분 분석(호주산 유연탄)

Ash Analysis	
Fe2O3	6.5%
Na2O	0.31%
K2O	1.79%
SiO2	58.5%
Al2O3	24.3%

결정형유리규산(SiO2) 시스템 입력 관리(발전사)

1. 일반사항

사 업 소 5000 태양발전본부      탄 종 166 MACQUARIE(AU)      입고일자 2017.08.14  
 항 차 5000-17106 103      연료구분      입 하 량 114,252.000  
 연료단가 79,050 KRW      공 급 사 200263 MACQUARIE BANK LIMITE      석적일자 2017.07.25      계약장번호  
 하역부두 부두 2      선 박 명 GLORIOSA LILY      검수완료일      F08(참기)

2. 일반성상

출수분 (%)	발열량 (기건식)	유황분 (기건식)	공급분석
(%)	(기건식)	(기건식)	고유수분    휘 발 분    회 분    고정탄소

3. 원소분석(%건식)

탄 소	수 소	산 소	질 소	황	회 분

4. 회용점(°C)

IDT(초기변형점)    ST(연화점)    HT(반구점)    FT(유동점)

5. HGI, 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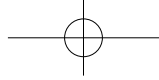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HGI    입도(2mm)↓    입도(1 Inch)↑

6. 회성분(%건식)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SO3	기타

석탄회 분석 데이터

항차	탄종	원산지	입고일자	입하량 (Ton)	회성분(wt%, 건식)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TiO2
16-001	Trafalgar	홍콩베아	2016-10-13	64,637	56.10	17.70	12.00	3.06	1.88	2.88	1.76	3.22	0.81
16-002	Suek	러시아	2016-11-29	90,950	52.84	26.23	5.92	5.19	1.86	1.01	1.89	3.87	1.18
16-003	Ensham	호주	2016-12-12	142,641	54.41	26.08	6.51	6.06	1.36	0.36	1.43	2.77	1.01
17-001	Vitol	호주	2017-01-16	137,843	78.83	14.59	3.97	0.48	0.34	0.26	0.72	0.26	0.68
17-002	Mercuria	홍콩베아	2017-01-29	133,989	58.61	25.86	5.84	2.20	1.84	1.86	2.33	0.98	0.98
17-003	Glencore	호주	2017-02-13	133,701	57.24	23.96	8.30	4.77	1.84	0.81	1.31	1.81	0.87
17-004	Suek	러시아	2017-03-12	119,829	52.84	26.23	5.92	5.19	1.86	1.01	1.89	3.87	1.18
17-005	Glencore	호주	2017-03-20	133,700	57.60	23.65	9.49	2.89	1.78	0.60	1.34	0.62	0.81
17-006	Energyman	인도네시아	2017-04-01	62,260	50.85	23.00	5.52	7.35	3.95	3.55	1.88	2.55	1.02
17-007	Noble	호주	2017-04-13	132,716	67.50	23.20	4.26	0.72	0.72	0.45	1.44	0.23	1.07
17-008	Noble	호주	2017-04-18	134,162	71.20	21.90	3.33	0.46	0.46	0.17	0.94	0.10	0.95
17-009	Suek	인도네시아	2017-04-24	72,391	54.20	26.90	10.70	2.41	1.82	0.37	1.43	0.50	1.05
17-010	Cloud Peak	미국	2017-05-02	68,589	35.60	21.40	5.82	10.80	3.38	5.72	1.07	10.00	1.05
17-011	Energyman	인도네시아	2017-05-10	66,200	49.30	22.20	6.10	7.46	3.94	3.97	1.72	3.67	0.90
17-012	Glencore	호주	2017-05-20	142,710	65.40	24.20	5.59	0.63	0.62	0.24	1.80	0.15	1.01
17-013	NCA	호주	2017-05-19	126,707	56.60	23.90	9.52	3.35	2.03	0.54	1.24	0.55	0.89
17-014	Energyman	인도네시아	2017-05-31	77,000	49.70	22.90	6.07	7.74	4.40	3.91	1.69	2.21	0.94
17-015	Glencore J	인도네시아	2017-06-10	77,000	44.60	27.10	14.60	4.92	2.32	0.54	1.65	2.86	0.96
17-016	Glencore	호주	2017-06-14	126,102	63.30	24.90	6.29	0.97	0.63	0.27	1.66	0.29	1.06
17-017	Glencore I	인도네시아	2017-06-16	77,000	45.50	26.70	9.98	7.18	2.81	0.33	1.60	4.08	1.04



유연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결정형유리규산 성분 표시 및 발암성 경고 표시								
GHS Classification: Carcinogen Category 1A								
Label element								
<b>3.1 Substances / Mixtures</b> <table border="1"> <thead> <tr> <th>Ingredient</th> </tr> </thead> <tbody> <tr> <td>COAL</td> </tr> <tr> <td><b>QUARTZ (CRYSTALLINE SILICA) (Respirable fraction)</b></td> </tr> <tr> <td>MINERAL ASH (Total)</td> </tr> <tr> <td>MOISTURE</td> </tr> </tbody> </table>	Ingredient	COAL	<b>QUARTZ (CRYSTALLINE SILICA) (Respirable fraction)</b>	MINERAL ASH (Total)	MOISTURE	<table border="1"> <thead> <tr> <th>GHS Label Elements</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GHS Label Elements	
Ingredient								
COAL								
<b>QUARTZ (CRYSTALLINE SILICA) (Respirable fraction)</b>								
MINERAL ASH (Total)								
MOISTURE								
GHS Label Elements								
Signal Word	<b>DANGER</b>							
Hazard statement	H350 May cause cancer							
<b>Inhalation</b>	If irritation or discomfort exists, remove the exposed individual to fresh air. Blow nose to clear breathing passages and rinse mouth with water. Recovery should be rapid after removal from exposure. If other than minor symptoms are displayed, seek immediate medical attention. May aggravate pre-existing respiratory conditions such as bronchitis or asthma due to nuisance dust nature. <b>Due to the potential to cause coal worker's pneumoniosis, medical surveillance involving spirometry and/or chest x-ray is often mandated where exposures are likely to exceed the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occupational exposure limit.</b>							
결정형유리규산을 노출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흡입할 경우, 노동자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활량 측정 또는 흉부X-레이를 포함한 의학적 감시가 자주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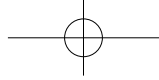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발전사들은 발암물질을 인지하고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부서가 유해물질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수입된 석탄은 연료조달부서를 통해 현장 부서로 공급되고 이 때 MSDS도 함께 제공됨. MSDS 관리의 주무부서인 산업안전부는 이러한 제품구매시스템과 MSDS 공급단계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보건관리자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환경측정 항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입탄성적 및 성분분석 정보가 필요하지만, 촉탁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보건관리자(대부분 간호사)는 입탄성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도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해야함에도 제공하지 않았음.

⇒ 입탄성적서 및 자체 분석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석탄 분진 관리 총체적 부실! 석탄분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관리 안 해

- 석탄 취급설비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을 포집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Dust Collector)를 운용 중인데, 개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위협사항 발생
-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간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2017년 남동발전에서 2건 뿐이었음.



□ 2014년-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황

○ 제출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출 건수	-	-	-	2	-

○ 제출 발전소 현황

연번	사업장명	접수일	제출대상	심사·확인일	심사·확인결과
1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2017.02.15.	건설설비(3대), 국소배기장치(7대)	2017.02.23. (심사)	초건부적정
				2017.06.29. (확인1회차)	초건부적정
				2017.07.10. (확인2회차)	적정
2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2017.12.01.	국소배기장치(1대)	2017.12.07. (심사)	적정
				2017.12.27. (확인)	적정

\*자료: 안전보건공단

○ 또한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의 50%이상일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유리규산을 포함한 49종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수준(최근 2년 이내)이 노출기준의 50% 이상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18년 하반기 서부발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화규소 노출기준(0.05mg/m<sup>3</sup>)의 50%를 넘는 바 있음.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9,10 및 IGCC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 작업 시 산화규소(결정체 석영)가 노출기준 대비 2배 초과한 곳도 있었음.
-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노출되고 있는 동안, 발전사는 결정형유리규산이 누락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

<서부발전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노출기준 50% 초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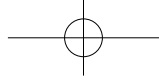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회사명	노출기준 대비 최대 노출수준(%)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한전산업개발	60.2	45.8
유플텔레너지서비스	-	89.6
영진 태안1발 사업소	82.2	15.8
영진 태안3발 사업소	55.6	199.6

\*자료: 안전보건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은 말랑 1,2급 마스크가 전부이다-

**방진마스크**

<b>특진마스크</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카톡1</p> <p>하중 운반 및 회차리 1급,2급 씩어서 지급하고 활성탄마스크도 지급합니다. 탈항 폐수 1급, 현장운전원 2급 사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카톡2</p> <p>당진은 운전,정비 모두 1급 마스크 사용 중입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방진2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방진1급</div>
--------------	--	--



## 고 김용균 사망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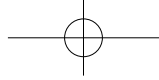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1.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동발표문)과 이행 여부

순번	내용	정부발표	진행상황	이행	
1	진상규명	특별근로감독	1,029건 위반 발표	○	
		김용균 특조위 구성(권고안시행 약속-2019.2.5)	권고안 발표	×	국무총리실
2	책임자처벌	노동부 조사, 유가족-서부발전, 하청업체 고소	수사 진행 중		
3	긴급조치	2인 1조, 설비인접 작업시 설비정지, 인력충원 조사, 1급 발암물질 대책 (2018.12.17. 고용노동부, 산업부 장관 발표 및 2019.2.5. 정부-여당 발표)	2인 1조 인원 일부 채용 특조위 권고안 490명 (170명 충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4	정규직 전환	연료환경설비운전-공공기관으로 정규직전환 조속 매듭	노사전 협의체 파행 특조위 권고안 무시 국가인권위 권고안 무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상정비-노동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논의	상동	×	
5	노무비 전액 지급	노무비 삭감없이 지급	11개월 지난 자금도 착복 중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6	추모조형물	태안화력 내 추모조형물 설치(서부발전 합의)	논란 중	×	발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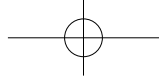
\* 정부가 발표하거나 한국서부발전이 유가족 및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항 중 온전하게 해결된 것이 전무함.

### 2.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순번	권고내용	해당노동자	이행
1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발전비정규직	
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세부권고안) 직접노무비 낙찰률 미적용,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공공부문 간접고용 (자회사 포함)	
3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세부권고안) 위험작업 2인 1조, 주52시간 준수 및 주 40시간 실현, 월 7회 이상 야간노동 금지, 대근제도 개선-연차휴가 보장,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 줄이는 교대제 개선, 인력계획 산출 시 현장노동자 의견 반영	공공부문 노동자	
4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세부권고안) 작업장 위험시설 개선과 작업중지권을 실질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공동교섭 의무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전체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	



5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세부권고안) 사고원인으로 노동자 개인과실 조항 삭제, 조사과정에 노동자(대표)의 동등한 참여와 조사권 보장, 시설 및 설비개선 요구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요구권,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요구권, 노동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요구권, 산재사고로 인한 재해자 및 재해자 동료 트라우마 치료 체계화 및 의무화	전체 노동자	
6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세부권고안) 정부경영평가 항목에서 안전지표에 노동자 직접 평가 지표 삽입-현장노동자들의 설비개선 요청 달성률 등 안전과 관련한 현장노동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개선지표, 정부 경영평가에서 산재발생시 과도한 감점지표 개선 및 산재 및 아차사고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승점 지표 적용, 발전5사 내부평가 지표에서 산재발생 관련 감점지표 삭제, 도급계약시 산재관련 벌과금 규정 삭제, 정부경영평가 및 협력사 도급계약서에 산재 은폐 적발시 감점 및 퇴출조항 삽입	공공부문 전체노동자	
7	노동안전과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민영화·외주화 철회 (세부권고안)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민영화, 외주화 철회	발전 비정규직	
8	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 (세부권고안)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이전 한국전력공사 체계 같은)을 적극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발전분야에 대한 통합권고, 산업부의 주관 하에 노조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미래 전력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논의 시작	발전소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9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세부권고안) 발전회사 안전보건담당 이사의 선임 추진, 발전소 처(실)장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책임규정화 시행, 5개 발전사의 사건, 사고 DB 및 종합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실행, 처(실)장 및 부(팀)장에 대한 라인조직의 개인별 안전보건활동 평가지수의 추가시행, 양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산재 예방을 위한 질적 선행지표 개발, 현장 위원회에 대한 개선 대책의 우선순위 정립	발전소 노동자	
10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축과 의료체계 확립 (세부권고안)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고 실질적 권한 부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발전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지도, 조언), 상주노동자 1,000명 이상 발전소에 부속의원 설치(전문의 배치), 상주노동자 1,000인 미만의 발전소는 외부 산업보건의 위축(주 1회의 이상 방문), 발전소별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시스템 확립	발전소 노동자	
11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 (세부권고안) 발전5사 안전보건 운영체계 공동 구성, 발전소 협력사 간 안전보건관리 조직 통합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보건관리자 직급 개선과 고용 체계 개선, 보건관리자 인력충원, 안전보건관리 계상비 항목 개정(인건비는 별도로 산정)	발전소 노동자	
12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의 설립 (세부권고안) 한전 자회사인 한일병원에 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 지원 센터 설립, 발전소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전략개발과 보급, 발전사 및 협력사 산재 및 산재위험요인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사 및 협력사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지침의 개별과 보급, 발전사 및 협력사 노동자 코호트의 구축을 통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적조사 연구, 발전사 및 협력사의 안전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발전소 노동자	
13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세부권고안) 안전보건의 집단적 노사관계 내실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활동보장	전체 노동자	



14	석탄 취급 관련 설비의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세부권고안) 벨트 컨베이어를 밀폐형 운송설비로 개선, 낙탄처리방법 개선, 구동폴리 및 벨트 컨베이어 주변 안전펜스 설치, 폴코드 주기적 점검 및 안전 바 설치, 모든 비상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의 설치 방법 개선, 석탄취급설비 점검방법 및 낙탄처리지침 개선, 설계기준탄 사용 원칙 마련, 모든 작업 동선의 조도 개선	발전소 노동자	
15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 개선 (세부권고안) 탄 및 회분진이 주로 문제되는 작업에 대한 중금속 노출 평가 실시, 정비작업 대상 특화된 작업환경 관리방안 수립, 옥내저탄장의 특화된 작업환경 관리방안 수립, 화학물질 구매 시스템에 위험성 평가과정 도입과 보건관리자 참여, 입탄성적서에 명시된 유해물질 함량 정보 공유, 발전소 및 협력시간 통합적인 작업환경 관리, 결정형 유리규산 고노출자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 포함	발전 원하청, 플랜트, 화물	
16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세부권고안) 산재 통계 조사 및 관리방법 개선, 근본원인 조사 원칙을 포함한 사고조사 목적 및 방법 개선(처벌이 아닌 재발방지 목적 명시) 사고조사 시 노동자 대표 참여권 보장, 사고 은폐자 처벌 규정 강화,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전체노동자	
17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발전소	
18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전체 노동자	
19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전체 노동자	
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체 노동자	
2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전체 노동자	
22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 강화	전체 노동자	

작년 말 수많은 국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으며 추모의 발길을 모아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과 직면했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일터가 죽음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발표 중 가장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위험은 외주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하여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노동안전보건의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